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 제6차 위원회 -

2020. 10. 1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제6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 ☐ 일 시 : '20. 10. 13.(화) 14:00~16:30
- ☐ 장 소 : 서울 코리아나 호텔 (7층 글로리아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5(태평로1가)
- ☐ 참석대상 : 위원장, 당연직위원(5), 위촉위원(24)
- ☐ 주요 안건(안)
- (심의)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 (심의)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안)
 - (심의)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
 - (보고) 좋은농협위원회 운영 현황 및 계획(안)
 - (보고)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안)
 - (보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 ☐ 세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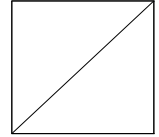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참석자 소개 등	사회자
14:10~14:15 (5')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4:15~14:45 (30')	○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농어촌분과위원장
14:45~15:15 (30')	○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안)	청년희망위원장
15:15~15:25 (10')	○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	사무국장
15:25~15:50 (25')	○ 좋은농협위원회 운영 현황 및 계획(안)	좋은농협위원장
15:50~16:00 (10')	○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안)	사무국장
16:00~16:20 (20')	○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사무국장
16:20~16:30 (10')	○ 위원장 마무리말씀 및 폐회	위원장

* 회의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 심의안건 제2020-2호 5
 -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 심의안건 제2020-3호 29
 -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안]
- 심의안건 제2020-4호 83
 - 남북농림수산업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위원 임기 연장[안]
- 보고안건 1 89
 - 좋은농협위원회 운영 현황 및 계획[안]
- 보고안건 2 111
 -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안]
- 보고안건 3 115
 -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 참고 125
 - 제5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공개



의안번호	제2020-2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0. 10. 13. (제 6 회)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장)	황 수 철
제출 연월일	2020. 10. 13.	

1. 의결주문

-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
- 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으로 다양한 사례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형’ 사회적경제 대책 수립 필요성이 지속 제기

3. 주요내용

- (중앙정부 지원체계 정비)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과 종합대책 마련, 법·제도 정비, 중앙-지방의 정책추진체계 정비
- (지자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전담부서 설치·지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별 연계·통합
- (현장밀착형 주체 육성)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의 유입, 읍면 단위 중심의 주체 발굴·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간 연대협력, 지역 농·수협의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촉진
- (사회적경제 지역모델 개발·확산) 농어촌 공공건축물 활용, 돌봄 연계형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설립지원, 사회적 농업의 확산 및 연계·협력 강화, 한국형 LEADER 프로젝트 시범 도입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농특위, 국회의원 김정호 공동주최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9.11.22.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영광 여민동락 공동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국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 농특위 제3차 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보고 및 토론: 2019.12.3.
- 관계부처 의견수렴 · 협의: 2020.4~5.
 - 제4차 농어촌분과위원회 서면검토(3.24~4.1),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별도규정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일반농산어촌사업 유희시설 활용도 제고 및 추진계획,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논의(2019.5.7.)
 - ‘5개 부처 MOU 추진경과 및 협력사업 현황’, ‘신활력플러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현황 및 계획’(2020.6.15.) 공유
- 당연직부처(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 등 의견조화: 2020.9.8~9.16
 -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광역 지자체(9개도) 등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안]

2020. 10. 1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13
II. 농어촌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4
1. 현황	14
2. 문제점	16
III.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8
1. 농어촌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19
2. 농어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1
3. 농어촌 사회적경제 현장밀착형 주체 육성	22
4. 농어촌 사회적경제 지역모델 개발·확산	25

I. 추진배경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

○ 부처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

- 특히, 농어촌 사회적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은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미흡

○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을 비롯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18.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2),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19.11),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방안('19.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1) 등 수립·시행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형' 사회적경제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공간, 주체, 자원 등의 측면에서 도시와 다른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 요구

○ (공간) 낮은 인구밀도와 분산 거주로 생필품 및 사회서비스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급의 특수성이 존재

○ (주체) 급속한 과소화와 초고령화로 지역 내부에서 주체 확보가 곤란

○ (자원)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유희화가 도시에 비해 심하고, 보전해야 할 자원과 문화유산 등이 방치되는 상황

II. 농어촌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 황

□ 농어촌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사회서비스가 투입되어 도시에 비해 삶의 질이 저하

○ 읍·면 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미흡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기초 서비스 공급이 부족

* (농어촌 정주 만족도 조사,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 만족도 격차가 큰 서비스 항목) ①의 료서비스 접근성 (도시 7.3/면지역 5.8) ②의료서비스 수준 (6.9/5.5), ③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7/5.5) ④임신·출산 서비스 이용 편의성 (6.3/5.0) ... (KREI, 2019)

* (전국 면단위) 슈퍼마켓 없음 45%, 이·미용실 없음 43%, 어린이집 없음 37%, 병· 의원 없음 76%(KREI, 2017)

□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이 미흡하고 물적 기반도 취약

○ '19년 현재 농어촌에 6천여 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존재 추정

* 사회적기업 607개, 협동조합 3,774개, 마을기업 958개(KREI, 2020), 농어촌공동체회사 435개 (소득사업유형 314, 사회서비스제공형 29, 복합형 92), 사회적 농장 18개 등(농식품부, 2019)

○ 주된 활동영역은 농산물 생산·가공·유통(40.9%), 식품 외 제조· 판매(13.8%), 환경·에너지(10.0%) 등에 편중(농식품부 외, 2019)

○ 출자금이나 상근자 수 등 여러 면에서 매우 열악하고 공공부문의 지원 없이는 자립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

* 협동조합 출자금: 1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53.8%, 5천만원 미만이 88.8%(KREI, 2019)

□ 최근 농어촌의 취약한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조달에 사회적경제가 적극 활용되고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조달하는 주민주도형 사회적경제 우수사례가 다양한 영역에서 등장
 - 생필품 판매 및 재가노인복지 시행(영광 여민동락공동체), 청소년 등 주민 교육서비스 제공(장수 초록협동조합), 면단위 지역버스 운영(횡성 금광골 영농조합법인) 등
- 농어촌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경제에 주목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한 지자체도 증가
 - '20.9월 현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26개
 - 농어촌 기초지자체 중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민간 협의체 구성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춘 사례도 등장(완주군, 청양군, 원주시 등)

□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군 간 편차가 크게 발생

-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은 상위 20% 시·군에 39.7%(평균 75.8개), 하위 20% 시·군에 8.8%(평균 16.7개)가 분포하여 4.5배 차이
 - * '19년 기준, 농어촌 139개 시·군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총 5,339개, 시·군 평균 38.4개임(KREI, 2020)
- 농어촌 지자체의 인구수와 도시접근성, 단체장 관심도 등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
 - * 수도권 및 광역시 내 농어촌 시·군은 평균 65.8개, 일반 농어촌 시·군은 33.5개임
 - * '19년 기준, 화성시 168개(인구 839,493명), 완주군 143개(인구 91,828명)인 반면에 의령군 10개(인구 26,902명), 군위군 11개(인구 23,437명)로 시·군 간 편차가 큼

□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중간지원 조직, 협치기구의 설치·연계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 미흡**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광역 지자체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고, 농어촌 시·군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시·도별 시·군·구 중간지원조직 설치현황(총 69곳): 서울 23, 인천 5, 광주 3, 대전 1, 울산 1, 경기 21, 강원 2, 충남 3, 전북 4, 경북 3, 경남 3곳(행안부, 2019.6)

○ 사회적경제 협치기구가 없거나 가동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

*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설치된 시·군·구 103곳 중 41곳만 운영되며, 민·관 협의체가 설치된 23곳 중 19곳만 운영 중(행안부, '19년 상반기)

□ 농어촌 내부에 사회적경제를 추진할 주체가 절대 부족하고 자립적 경제 기반이 취약하지만 관련 **종합대책은 불충분**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의 발굴과 육성, 외부 유입 촉진, 도시와의 협력 등 체계적 전략과 종합대책이 미흡

- 농어촌 특성에 맞춰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연대와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독자 정책과 사업이 부족

○ 농어촌 지역의 유헴 공공시설을 사회적경제와 연계해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부족

- 빈집, 폐교, 폐창고, 토지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활용을 희망하는 시·군 소유의 유헴자원 전반에 대한 조사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미흡

□ 다양한 중앙부처 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경제가 강조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사회 차원의 준비는 부족**

○ 중앙정부 지역개발사업을 지역단위에서 통합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시도가 부족한 결과 농어촌의 사회적경제 육성에도 한계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문화도시(문체부), 어촌뉴딜300(해수부), 신활력플러스(농식품부)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들이 지역사회 기반의 협치 방식으로 기획·추진되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시행되는 관행이 지속

* 행안부 외 관계부처합동,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19.11)에서도 지역현장의 추진기반 마련 차원에서 부처 간·담당부서 간 정책 칸막이 낮추기, 포괄적 민·관 협치, 지역주도의 추진체계, 중간지원조직 운영 확대 등을 제안

○ 5개 부처의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의 경우 사업간 연계 내용, 담당 주체, 지원조직 등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보완 필요

* 5개 부처 MOU 체결(‘20.3.5) : 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각 부처 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시너지를 도출하고 새로운 지역 활성화 사례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로 추진. 실제로는 교육부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복지부 지역사회통합 돌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등 부처별 대표사업 중심으로 진행

Ⅲ.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기본방향】

- ◆ 농어촌 관련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우선 정비
 - ◆ 농어촌 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 ◆ 사회적경제 주체를 읍·면 단위로 집중 육성하고 연대 활동을 지원
 - ◆ 농어촌 자원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모델을 발굴·확산
- ⇒ 농어촌 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 연계·협력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추진전략	주요과제
【중앙정부】 농어촌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마련 ◦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조직 정립·제도 정비 ◦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정비
【지자체】 농어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시·군의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유도 ◦ 사회적경제 전담부서 설치·지정, 협력체계 강화 ◦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별 연계·통합
【사람과 조직】 농어촌 사회적경제 현장밀착형 주체 육성	◦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 유입방안 마련 ◦ 읍·면 단위 중심의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육성 ◦ 시·군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활동 촉진 ◦ 지역 농·수협의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촉진
【사업모델】 농어촌 사회적경제 지역모델 개발·확산	◦ 공공건축물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 '농어촌 돌봄연계형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지원 ◦ 사회적 농업 확산 및 연계·협력 강화 ◦ 한국형 LEADER 프로젝트, '(가칭) 농어촌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도입

1 [중앙정부] 농어촌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정비

□ 농어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부처합동으로 통합적 추진체계 등 종합대책 마련

○ '19.12월 부처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적경제 연계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여 농어촌형 사회적경제 종합대책 수립 추진

- 추진체계 정비, 주체 육성, 활용모델 개발·확산 등을 보완하여 강화
- 농어촌 사회적경제와 푸드플랜, 마을만들기, 6차산업화, 귀농어·귀촌 등 기존 사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 수립

○ 관계부처는 관련 사업의 연계·조정, 지정공모방식 도입, 운영상 문제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조치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 설치·운영

- 농식품부·해수부가 중심이 된 농어촌형 사회적경제 TF 운영 검토

* 별도 TF 구성 전까지는 기존 기재부 주관의 사회적경제 TF에서 관련 안건 협의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조직 정립 및 관련 제도 정비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촌의 주체·공간·자원 등 특성을 반영하여 농어촌에서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조직 정립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정되나 농어촌조직은 모호

* 농어촌조직은 '농어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농어촌공동체회사'를 기준으로 삼아 현재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9조의 4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받은 법인, 조합, 회사, 농어업법인, 단체'가 가장 대표적인 표현임

- 사회적 농업을 포괄하는 '농어촌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을 정립하고,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반영

○ 농어업·농어촌 정책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적극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사업지침 반영, 가이드라인 제정 등 추진

-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업경영체 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사회적경제 조직 우대 및 육성 조치 삽입

- 농식품부, 해수부 등 각 부처별 사업지침에 사회적경제 조직을 우대 하거나 유인하는 조항을 넣고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새롭게 정립된 ‘농어촌형’ 사회적 경제 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조항에 포함 검토

-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반영하여, ‘농어촌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후 개정 과정에서 반영토록 추진

□ 중앙정부에서 광역-기초 지자체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체계 정비

○ 농어촌정책 직접 관련 부처(농식품부·해수부·농진청·산림청 등)는 담당과 설치 및 업무 전담자 지정을 통해 정책 전문성 강화

- 전담부서 지정과 업무 협조체계 강화,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장치 도입

○ 농어촌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형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

-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협약, 사회적 농업 등을 추진할 때 관련 ‘통합형 또는 연계형 중간지원조직 정비’를 적극적으로 유도

- 중앙정부의 별도 사업 발굴, 개별 사업지침 반영, 평가 가점 부여 등 정책적 유도 역할을 통해 농어촌정책의 통합성 강화

□ 시·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유도

-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협치기구*를 구성하여 기초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 결정
 -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의체* 구성을 장려하고, 정책방향 계획과 사업 집행의 파트너로 적극 활용
- *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17.2) :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창업 공동체 등 54개 조직과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18.4). 인력양성, 실태조사, 연구 및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출판 및 정보서비스 등을 연대하여 추진(농식품부, 2019)
- 지자체의 정책 영역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

□ 사회적경제 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지정과 관련 정책의 협력체계 강화

- 행정 내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설치 혹은 지정하여 운영
 - * 전담부서(과, 계·팀) 설치사례 : 사회적경제과(논산시, 아산시, 춘천시, 화성시, 완주군, 청양군),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계(의성군),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남양주시), 혁신공동체과 사회적경제팀(해남군)
- 부서별로 분산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 푸드플랜, 사회적농업, 어촌뉴딜 300, 선도산림경영단지 등과 농어촌 사회적경제 정책의 연계성 강화

□ 농어촌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시·군 내 기존 조직의 기능별 연계·통합을 고려하여 설치

○ 시·군 내 사회적경제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 사회적경제 인적자원이 취약한 농어촌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읍·면 주민자치회, 외부 조직의 참여 유도 등으로 정책 및 주체 간 연계·협력 확대

○ 시·군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도, 인적자원,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유사 조직*의 연계·통합 촉진

* 자활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

-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주도의 통합형 법인* 설립 촉진

*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20.7.1.발족, 54명 규모)은 연구용역,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도설립 허가를 거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마을만들기팀, 사회적경제팀, 인큐베이팅팀)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경영사업팀, 가공지원팀, 공공급식팀)를 둠

3 [사람과 조직] 농어촌 사회적경제 현장밀착형 주체 육성

□ 도시 청년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의 유입방안 마련

○ 청년 등 도시 인적자원이 농어촌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실습·취업하고자 할 경우 일정 기간 교육비와 생활비* 등 지원

- 귀농귀촌·귀어귀촌센터 등은 지역의 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체험의 기회를 찾아 제공

* 농식품부의 귀농청년 장기교육(교육비지원),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생활비지원)사업 참조

- 지역 내·외의 청년·여성·이주민, 다양한 단체들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활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진입방안 마련
-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 지역 공유자산 활용, 다양한 사회실험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등과 연계한 지원사업 추진
- * 문화인력 활동, 주거 지원단, 복지서비스, 교육 및 진로상담, 마을박물관 큐레이터,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확산 활동 등의 분야

□ 읍·면 단위 중심의 농어촌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육성

- 읍·면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다부처 지역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발굴, 육성
- * 도시재생 뉴딜, 주민자치형 공공생활서비스, 미래형 교육자치사업, 사회적농업, 통합 돌봄선도사업 등
- 인구 2천 명 미만의 읍면이 늘면서 영리목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사회서비스를 주민공동체 등이 담당하도록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이 지원
- * 인구 2천 명 미만 읍면 비율: ('00) 168개(11.9%) → ('10) 354개(25.1%) → ('15) 322개(22.9%) → ('19) 317개(22.6%) [15년까지 인구총조사, '19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과소화 지역은 각종 사업의 참여 자격과 기회를 폭넓게 적용
-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 마련,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완화, 바우처 도입 및 적용 범위 확대,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

□ 시·군 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활동*을 촉진

- 동종 업종간, 유사 업종간 협업을 통해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세성과 활동의 한계를 보완하여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
-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 관내 3개 조직 이상 참여한 곳을 대상으로 업종별·지역별 공동상품 및 브랜드 제작, 공동판촉, 역량강화 등 지원('19년 팀당 8백만원 지원)

□ 지역 농·수협의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촉진

- 농·수협 등의 상호금융계정에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농협 상호금융사업의 범위 안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대출 등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이나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마련 검토
 -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①항의 4호 '상호금융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내용을 개정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 검토
 - 지역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기업 우대 대출 상품의 개발·출시로 지자체 등의 공익형 사회적 기금 확대에 대비
 - * 전국신협과 신협중앙회는 공동으로 2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중
 - * 충남도는 3년간 200억원의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고 신협중앙회를 기금 운용기관으로 선정하여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1.0% 내외 저금리 대출 지원, 충남도는 신협에 최대 2.0% 이자를 지원하여 손실 일부를 분담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촉진
 - 수협 지역 상호금융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맞춤형 여신상품 개발 공급
 - * 현재 수협은행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 대출 전용상품 공급을 확대 적용
- 공공적 성격의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조합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공헌 활성화
 -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①항의 5호 복지후생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가~다 목 외에 '라. 비영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업 지원, 협력 확대'를 신설하여 농협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출자 등 적극적 협력을 유도

□ 농어촌 공공건축물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적극 유도

○ 농어촌 공공건축물의 활용실태를 파악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공간 및 프로그램 기획까지 발전

- 공공건축물*의 기본정보 외 조성목적, 운영주체, 활동프로그램 등 활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일자리 창출**

* 공공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일반농산어촌 시군의 사업 등 중앙·지방의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조성, 운영 중인 시설 또는 공간을 말함

** 서울시의 경우 ‘공동체공간 플랫폼(<http://communityspace.kr>)’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공간이용 정보와 운영 현황 조사과정에서 신규일자리 창출('19년 85명)

- 사회적경제 주체가 편리하게 대관·임대·위탁받을 수 있고, 이용 주민들의 예약이 용이하도록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및 예약기능 제공

* 공간 운영자와 시설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 공유사무실, 커뮤니티센터, 공연장 등의 시설을 쉽게 찾아서 활용하도록 마을 공동체공간의 온라인 지도형태로 구축

- 지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플랫폼 공간 기획 및 신규 사업 창출 유도

○ 공공건축물의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정비

- 농어촌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건축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적용*의 범위를 확대, 규제개선 사항** 발굴·검토

*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로 인증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제과점, 음식점, 박물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등을 허용

**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를 위한 민간위탁 계약 기간(2~3년) 보장, 추가 수익발생 시 지방세 전입, 시설 개조에 따른 원상복구, 전대(sub lease)금지 등 활용제한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공공건축물 이용 기반 마련

□ ‘(가칭)농어촌 돌봄연계형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설립 지원

- 농어촌 주민 스스로 ‘매일 안부 묻기’, ‘병원 동행하기’ 같은 돌봄활동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운영하도록 지원
 - 농어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기존 공적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
 - * 돌봄이 필요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돌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면 지역 농업인 대상자가 140천명(KREI, 2020)
 -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의 서비스 기관을 주민이 사회적경제 조직 형식으로 설립하도록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정보제공, 학습 지원, 컨설팅 추진
- 농어촌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운영조건 및 특례 부여 검토

□ 사회적 농업 확산 및 연계·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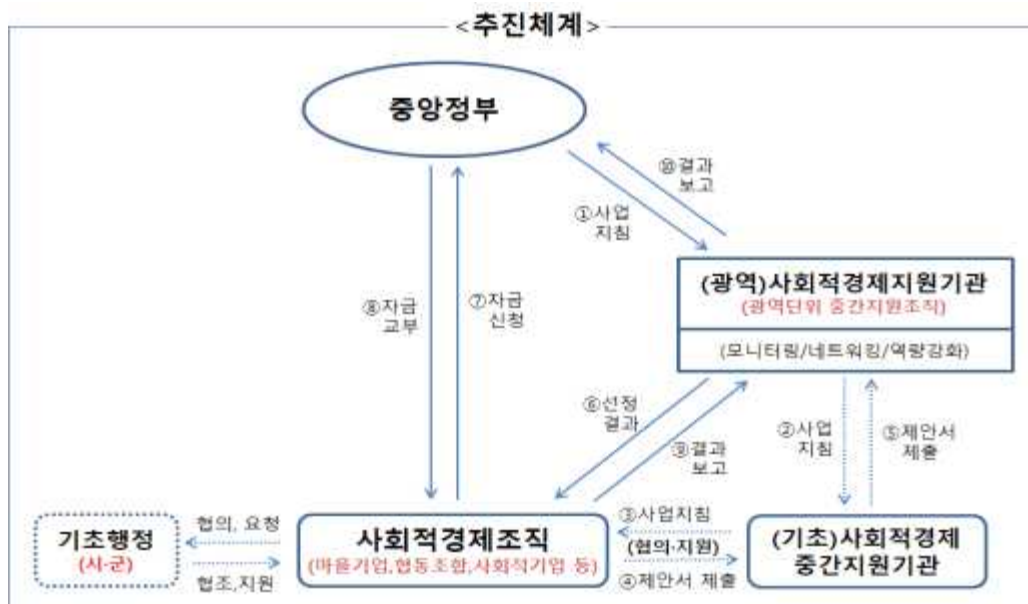
-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고, 사회적 농장의 서비스 비용 지불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농어촌 주민 여럿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농업 추진, 사업 참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
 - 이용자(또는 복지관)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사회적 농장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
 -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사회적 농장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사회적 협의를 진행
 - * 농업활동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기존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한국형 LEADER 프로젝트, ‘(가칭) 농어촌 사회혁신형 사회적 경제 시범사업’ 도입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생필품과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한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 시범사업 추진

* 행정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혁신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EU ‘LEADER 프로그램’ 운영원리, 추진체계·방식을 농어촌 사회적경제 영역에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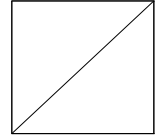
- 지역활동조직(local action group)중심으로 사업 기획·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연대 및 협력방안도 도출
-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이 해당 지역 사업대상자를 선정 하고, 시군 중간지원기관과의 연계를 주선하는 핵심역할 수행



- 기획-사업추진-예산집행-관리-평가 등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민간의 창발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기존 사업집행방식의 틀을 전면 전환
-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행정 개입 최소화
- 행정(기초지자체)은 관내 유휴시설 혹은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적극 발굴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강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임성규 농어촌정책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41 E-mail : limnong@korea.kr

공개



의안번호	제2020-3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0. 10. 13. (제 6 회)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현 찬
제출 연월일	2020. 10. 13.

1. 의결주문

-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농산어촌 청년희망특별위원회에서는 2020.2.19. 본 위원회에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을 보고하였음
 - 기본방향, 중점추진방향,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할 사업, 청년농 정착 확대를 위한 정책 보완 방향 등
- 본 안건은 상기 내용 중 청년농 정착확대를 위한 정책 보완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 확정하고자 함

- 본 보고서는 청년 세대의 농어업 분야 취·창업 준비 및 초기 정착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향과 전략을 제시함
 - 농어업분야 취창업은 영농어기반, 기술, 자본 등의 측면에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대다수 청년세대가 귀농어를 선택하기 쉽지 않음
- 농어촌 창업·취업(농식품 포함) 및 도농교류 분야 정책은 연말까지 확정지어 별도 보고할 예정임
 - 최근 반농반X형 귀촌 청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가능 농정을 담당할 청년층 육성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나 연구 축적과 자료가 부족하여 연말까지 구체안을 만들어 보고할 예정임

3. 주요내용

I. 농어업 분야 취창업 장애요인과 지원 한계

- 취창업 장애요인

< 취농분야 >

- 영농초기 : 영농기반, 영농기술, 멘토, 주거 등의 곤란을 호소
- 창농초기 : 경영자금, 농지, 생활비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
- 정착이후 : 힘든 노동, 생활 불편, 여가시간 부족 등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

< 취어분야 >

- 어촌의 폐쇄성,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의 어촌계 가입의 어려움

○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

- 대다수 취농어 지원이 정착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종료 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곤란
- 영농어 기반이 없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농어 정착 모형 활성화 미흡
- 지자체 단위 청년세대 취농어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 취농어 관심단계, 준비단계에서 청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분산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교육 및 경험에 대한 접근성 제한

II. 기본방향 및 세부전략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어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층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게 4개 핵심전략, 15개 과제로 추진

- 전략 ① 청년세대가 영농어 기반 없이도 다양하게 유입되도록 경로 활성화
- 전략 ② 창농어 단계(예비가준비가초가정착기)를 세분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원
- 전략 ③ 지역단위 생태계를 통해 청년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
- 전략 ④ 반농반X의 새로운 정착모델 지원 및 청년세대가 농어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핵심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핵심전략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비 고
① 청년세대가 영농어 기반 없이도 다양하게 유입되도록 경로 활성화	농어가 경영승계 지원	농식품부 해수부	신규사업
	청년농을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	농식품부 지자체	기존사업개선
	농어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기재부 농식품부	기존사업개선
	공동 창농 및 공동체 지원 등 창농어 사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지자체	신규사업
② 창농어 단계 (예비기-준비기-초기-정착기)를 세분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원	청년 창농어 준비과정 마련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기존사업개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	농식품부	기존사업개선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사업 확대	기재부 농식품부	기존사업개선
	농업계 대학을 통한 창농인력 육성 기능 확대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기존사업개선
	농어업·농어촌 소양 교육 강화 및 농촌 체험기회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지자체	기존사업개선
③ 지역단위 생태계를 통해 청년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	정착단계별 청년 취·창업 정책 체계화	농식품부 해수부	기존사업개선
	지자체별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 내실화	농식품부	기존사업개선
	지자체별 청년농어업인 통합지원조직 운영	지자체	신규사업
④ 반농반X의 새로운 정착모델 지원 및 청년세대가 농어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청년 참여형 마을영농어 지원	지자체	신규사업
	청년 어촌계 정착지원 사업 추진	기재부 해수부 지자체	신규사업
	청년 농어업인 농어촌 사회기여 활동 지원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신규사업/ 기존사업개선

□ 참고사항 (관계부처 협의 등)

- 당연직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1차 의견조회: '20.7.6.~7.10.
 -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농촌진흥청,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2차에 걸친 운영위원회(13차, 14차) 의견 반영: '20.7.31, 8.28.~8.31.
 - (제13차) 교육, 경영승계 지원 등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내용 보완
 - (제14차) 우수후계농 지원, 추진전략의 구체화 등에 대한 검토의견 반영
- 농특위 농어촌분과 의견 반영: '20.8.20.
 - 승계농, 신규 진입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분야 등에 대한 검토의견 반영
- 당연직부처, 관계부처 2차 의견 조회: '20.9.15.~9.16.
 -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어업 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안)

2020. 10. 1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I. 추진 배경	39
II. 현황 및 여건	39
1. 청년세대 농어업 유입실태	39
2.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장애요인과 자원 한계	42
III.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 ..	44
1. 기본방향 및 핵심전략	44
2. 핵심전략별 세부추진과제	46

농어업 청년 취창업 활성화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



I.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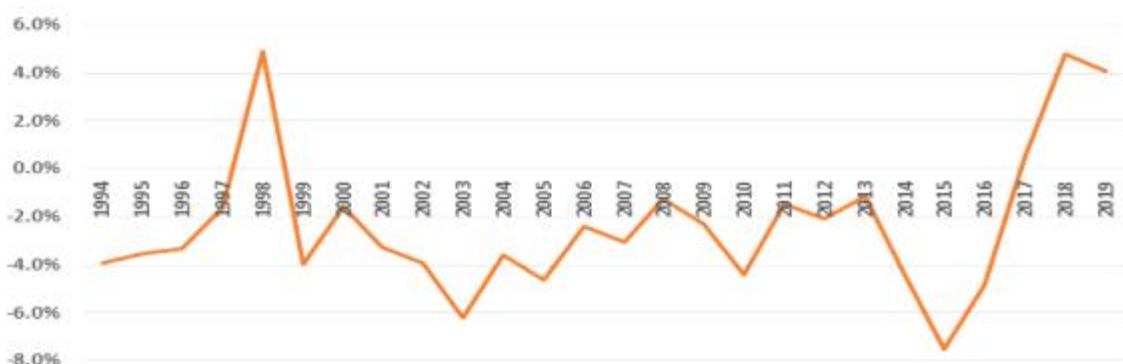
-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2000년 이후 농가수가 매년 20천 농가씩 감소하고 있고, 어가의 경우도 매년 2.5천 어가씩 감소
 - 또한 65세 이상 농업경영주가 53.5%인 데 비해, 40세 미만 경영주는 1.3%(1만 4,366명)에 불과함(2015년 기준)
- 앞으로 농어업을 이끌어 나갈 미래 청년 주체를 어떻게 길러 내는가가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대 과제 중의 하나임

II. 현황 및 여건

1. 청년세대 농어업 유입실태

- 청년세대 유입 현황
 - 1970년대 중반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가, 2017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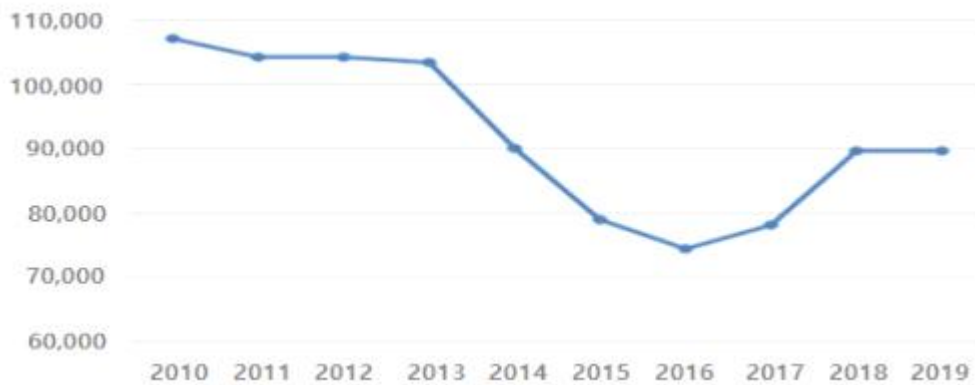
농림어업 취업자수 연 변화율: 1994~20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세대에 걸쳐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대 이하 청년 세대도 2016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됨
- 2016년 74천명 수준이던 30대 이하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7년 78천명, 2019년 89천명으로 증가하였음

청년세대 농림어업 취업자수 최근 변화(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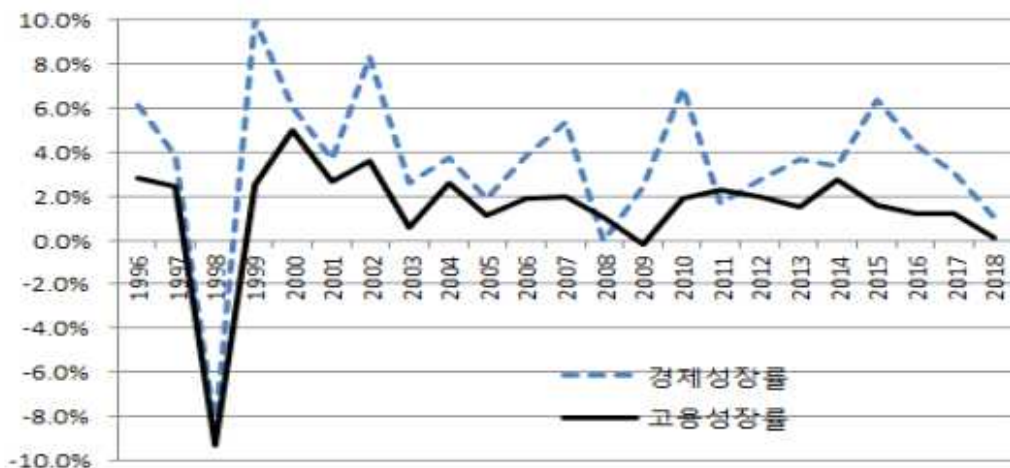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세대 유입 이유

- 경제적 요인: 비농어업분야의 고용사정 악화
- 최근 3년(2016~2018년) 비농업분야 경제성장율이 하락 중이며, 지난 20여년간 비농업분야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 정체된 시기에 대규모 귀농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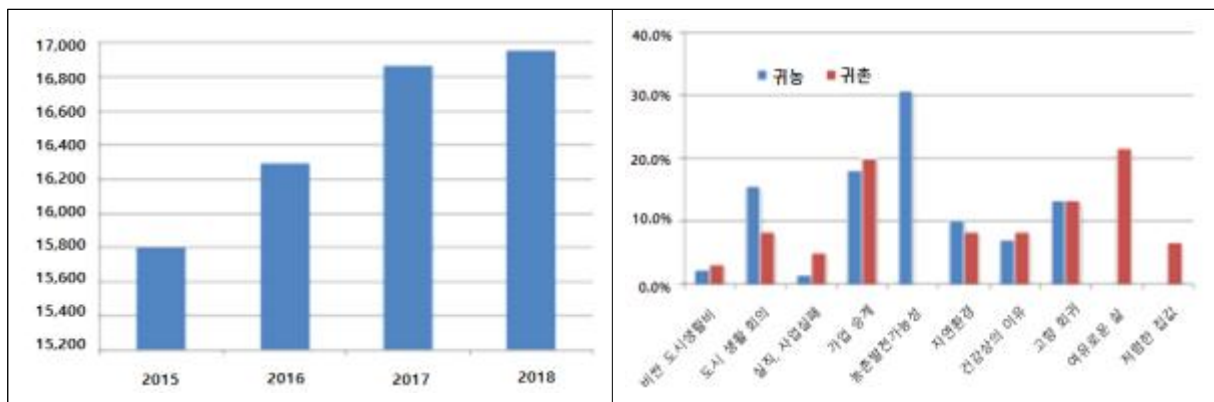
비농어업분야 경제성장률 및 고용성장률 변화



자료: 통계청, 국민계정, 경제활동인구

- 사회·문화적 요인 :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대에 걸쳐 **농어촌 지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한 50~60대 이상 세대뿐 아니라 20~40대 연령층에서도 농촌 지향성이 높음
 -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지향 흐름과 더불어 반농반X(半農半X) 삶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음
- 직업적 요인: 농림어업 직업의 매력 증가
 - 귀농·귀촌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갤럽 2018)를 보면, 최근 3년 30대 이하 귀농 및 귀촌 후 영농종사자는 2015년 15.9천 명에서 2019년 16.9천 명 규모(3년 이동평균)로 증가
 - 이들의 귀농·귀촌 이유를 보면 귀농의 경우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30.7%), ‘가업승계’(18.1%)가, 귀촌 후 영농종사자는 ‘여유로운 생활’(21.7%), ‘가업승계(20.0%)가 가장 많았음(60대는 자연환경 요인이 가장 많은 점과 대비)
 - 즉 청년세대에게는 농촌 어메니티적 요인도 있지만 농업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농업 분야로 들어온 중요 이유였음

30대 이하 귀농 및 귀촌후 영농종사자 변화(2013~2018)과 귀농·귀촌 이유



자료: 통계청, 귀농·귀촌 통계; 농림축산식품부·갤럽, 귀농·귀촌 실태조사

2.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장애요인과 지원 한계

□ 취창업 장애요인

○ 취농

- 영농 준비 : 영농기반, 영농기술, 멘토, 주거 등의 곤란을 호소
- 창농 초기 : 경영자금, 농지, 생활비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
- 정착 이후 : 힘든 노동, 생활여건 불편, 휴가(여유시간) 부족 등의 삶의 질 측면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

※ 농지 확보의 어려움: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체 농지매매·임차에서 이 사업을 통해 거래되는 농지가 많지 않으며 좋은 농지는 기존 농민들의 사적 거래로 신규 청년들에게는 오지 않는다’고 호소

○ 귀어

- 어촌의 폐쇄성 및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어촌계 가입 등이 불가능하여 귀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귀어인 중 대부분이 낚시어선을 운영하여 기존 어업인과 마찰 및 갈등 심화

※ 수산업·어촌의 특징

- 수산업은 어촌계라는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작업·분배하는 구조
- 마을어장, 양식어장 등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어촌계에서 이용하여, 농업과 근본적인 생산구조 차이
-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에 대단위 자본 및 시설 투자 필요
- 어촌, 섬 등은 농촌보다 더 고립되어 있어 더 폐쇄적임

□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

- 최근 다양한 청년 취농어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취농어 지원이 정착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 종료 후 안정적 정착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는 미지수

- 정착 초기 교육·생활비 지원 관련 사업(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 영농정착사업,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사업) 및 법인체 취업 지원 사업(인턴, 전문인력지원)외 아직까지 관련 정책 미흡
- 승계 이외 영농어 기반이 없는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취농어 정착 모형 활성화 미흡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자 다수가 부모 영농기반자로 부모 기반 없는 비율은 38.3%임(3개년 누적 선발자 4,800명 선발자 기준)
- 지자체 단위 청년세대 취농어 지원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 청년들이 실제 정착하게 되는 기초 지자체 단위의 청년 취농어 관련 담당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련 주체(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지은행, 농어업인단체 등)간의 연계가 미흡
- 취농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세대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취농어를 준비하는 청년세대의 저변 확대(준비 단계) 및 그 이전 관심 단계의 청소년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관련 교육 및 경험이 부족하고 접근하기도 어려움

청년 창농어 단계별 정착 장애 및 지원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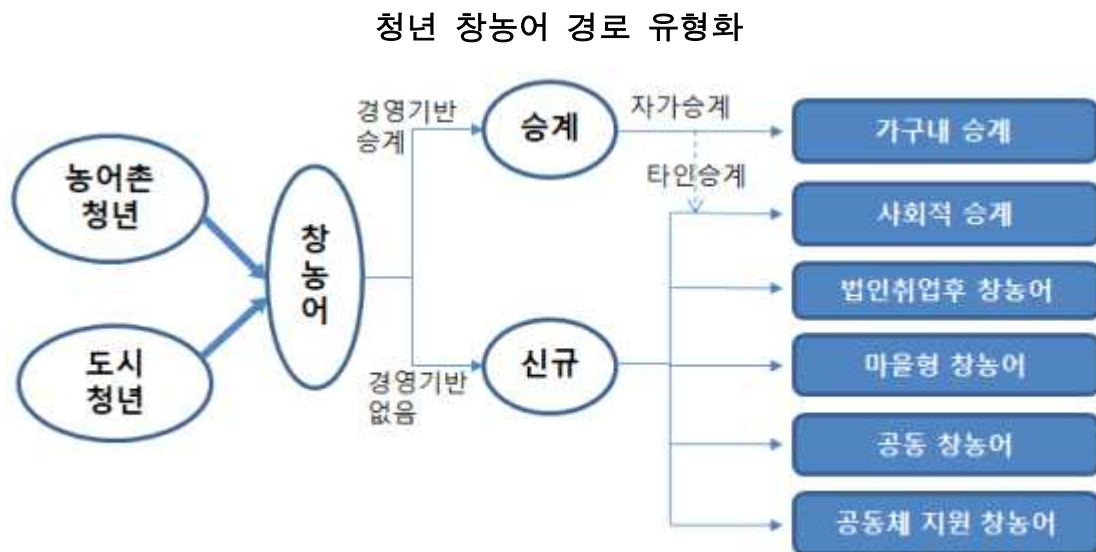


Ⅲ.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및 핵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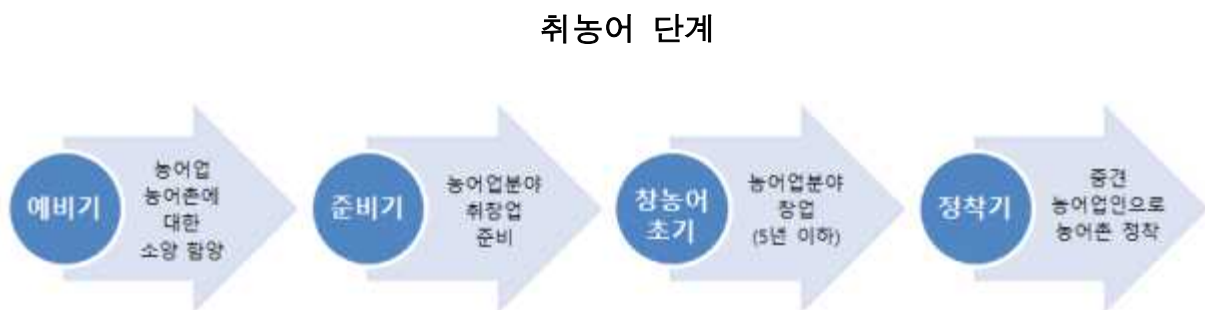
□ 기본방향 :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농어업 혁신을 주도할 청년층 육성’

□ 전략 ① 청년세대가 영농어 기반 없이도 다양하게 유입되도록 경로 활성화



자료: 마상진 외(2017) 수정보완

□ 전략 ② 창농어 단계(예비기, 준비기, 창농어 초기, 정착기)를 세분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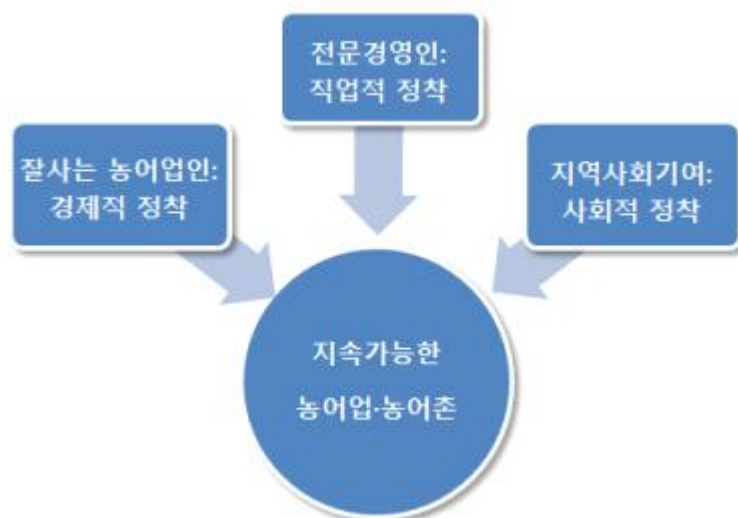
- 전략 ③ 지역단위 생태계를 통해 청년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
- 지역단위 창농어 생태계



자료: 마상진 외(2017)

- 전략 ④ 반농 반X의 새로운 정착모델 지원 및 청년세대가 농어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청년농어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자료: 마상진 외(2017) 수정보완

2. 핵심전략별 세부추진과제

핵심전략	세부 추진과제	담당기관	비 고
① 청년세대가 영농어 기반 없이도 다양하게 유입되도록 경로 활성화	농어가 경영승계 지원	농식품부 해수부	신규사업
	청년농을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	농식품부 지자체	기존사업개선
	농어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기재부 농식품부	기존사업개선
	공동 창농 및 공동체 지원 등 창농어 사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부 지자체	신규사업
② 창농어 단계 (예비기-준비기-초기-정착기)를 세분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원	청년 창농어 준비과정 마련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기존사업개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	농식품부	기존사업개선
	우수 후계농 추가 지원사업 확대	기재부 농식품부	기존사업개선
	농업계 대학을 통한 창농인력 육성 기능 확대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기존사업개선
	농어업·농어촌 소양 교육 강화 및 농촌 체험기회 확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지자체	기존사업개선
③ 지역단위 생태계를 통해 청년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지원	정착단계별 청년 취·창업 정책 체계화	농식품부 해수부	기존사업개선
	지자체별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 내실화	농식품부	기존사업개선
	지자체별 청년농어업인 통합지원조직 운영	지자체	신규사업
④ 반농반X의 새로운 정착모델 지원 및 청년세대가 농어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청년 참여형 마을영농어 지원	지자체	신규사업
	청년 어촌계 정착지원 사업 추진	기재부 해수부 지자체	신규사업
	청년 농어업인 농어촌 사회기여 활동 지원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신규사업/ 기존사업개선

□ 농어가 경영승계 지원(중양)

- 가족내 승계 : 낮은 농어가 승계율*을 제고시키고, 승계 농가의 청년세대가 부모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영투자모형을 가지고 영농어를 할 수 있도록 경영기반을 좀 더 이른 시기***에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줌

* 승계자 확보 농가 8.4%, 비확보농가 61.9%, 아직 모르겠음 29.6%(농촌진흥청 2019)

** 청년 승계자의 경우 부모님과 경영 및 생활상의 갈등이 많아 새로운 투자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음(마상진 외 2017).

*** 고령농의 경영이양 시점 후계자 나이: 60대 46.2세, 70대 54.8세 (마상진 외 2017)

- 부모·자식 간 의사소통 및 상속*, 세무·자산, 회계·법률 컨설팅, 경영협약 및 이양계획서 작성 등을 교육·컨설팅을 통해 촉진하는 사업 추진 확대 필요

* 농업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증여세 감면 혜택의 현실화 가능성 검토 포함

- 사회적 승계 : 후계자 없는 농가의 영농 승계를 위해 영농기반 및 영농 노하우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안 검토

* 농업인의 43.0%가 제3자 경영승계 제도 도입에 찬성(마상진 외 2017)

- 현재 ‘영농 승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중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자 승계 필요성 추진방안 등 검토

- 농어가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 지원조직 운영

- 농어가 승계관련 실태조사, 애로사항 청취·개선, 교육 컨설팅 등을 위한 전문 지원 조직 운영 등 농어가 승계 관련 활동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인식제고 활동, 실태조사, 애로사항 청취·개선, 차세대CEO스쿨 운영, 가업승계 세제 정보 제공(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

□ 청년농을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중앙, 지방)

- 신규 취농자에게 농지는 가장 큰 정착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의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농지은행이외의 합법적 농지임대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가, 최근(2020년 8월) 은퇴하지 않은 60세 이상 농업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
- 청년세대를 위한 농지사업(2030 농지은행)이 실행되고 있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거래되는 농지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청년농들이 접근할 수 있는 농지는 기존 농업인에 비해 매우 제한적임
 - * 농지은행(맞춤형농지지원)지원면적(매매, 임대) 3,022ha 대비 청년농업인(2030세대) 농지 지원면적은 1,697ha로 56.2%임(2019년 농어촌공사)
- 따라서, 농지은행 농지가 청년농들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신규 청년농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농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프랑스 농지관리기구(SAFER)는 농지거래시 농지를 확장하려는 농업인보다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권 부여

□ 농어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중앙)

-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세대가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농업분야에 진입하도록 유도
 - 농업법인에 근무하며 축적한 영농기술가, 경험, 법인이 가진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창농을 유도
- 우수 농업법인*, 청년농 설립 농업법인을 선별하여 농업법인 인턴 사업 및 전문인력지원 사업**을 확대(현재 200명 규모 → 1000명), 법인취업 전(학교와 농업법인간 산학협력 강화), 취업 중(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확충), 취업 이후 창농 사업연계 강화

* 2017년 농업법인조사 10억원 이상 매출 업체 4,580개, 전체의 20%

** 농업법인조사결과(2018), 농업법인 취업지원과 농업법인 전문인력 채용지원 제도를 40.8%가 현재 활용, 34.6%가 알지만 미활용, 24.6%가 모름

사례) 2018년 일본 고용지원 현황 : 2,625개 법인, 859개 농가에 5,941명 고용 지원

농업법인들의 고용관련 정책 요구



자료: 마상진 등(2019)

□ 공동 창농 및 공동체 지원 등 창농어 사업 활성화 지원(중앙, 지방)

- 비슷한 뜻을 가진 동료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창업. 특히 고령화된 농어촌에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농기계작업형 창업, ICT (정보통신기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그리고 BT(바이오기술)·관광 등 융·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농식품 분야 창업에 있어 공동 창농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EU 공동농업(Share Farming), 협동조합 농업(Worker's cooperative) 등 사례 참조

- 취농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안전한 농식품과 농어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하도록 함

* 크라우드펀딩 농업(Crowd funding), 공동체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사례 참조

□ 청년 창농 준비과정 마련(중앙, 지방)

- 현재는 신규로 경영체를 개설하는 경우에만 정착자금을 지원하는데 준비자에게도 지급
 - 기존 농촌진흥청의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준비과정’사업으로 확대 추진(준비과정 1년내외*, 사업규모 1000명 내외)
 - * 품목특성, 연수기관, 개인선택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
 - 광역 단위로 100명 내외 규모로 준비단계* 교육을 이수하고, 차년도 청년 창업농 정착지원사업을 받도록 준비시킴
 - * 일본의 농업차세대인재투자사업은 준비형(2년), 경영개시형(5년)으로 나누어 지급. 준비형의 경우 농업대학 등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 농업법인에서 연수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
- 창농 준비과정 내실화를 위해 영농기반, 농업기술, 판로개척 등을 지원받으며 실습할 수 있는 준비교육 장소로서 임대농장 확대 (지자체 당 1개소 운영)
 - 기존 농업법인, 농업학교, 선도농가(WPL)의 영농기반시설에 실습장*을 조성하여 작은 규모로 경영을 준비 (개소당 10여명 실습)
 - * 경기도가 한경대와 농협대 농장부지에 공공실습농장(팜웨어)을 조성하고 청년창업자들이 자기책임하에 1:1 컨설팅을 받으며 농사를 지어보고 이후 창업하도록 유도

□ 청년 창농어·영농어정착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중양)

○ 사업 규모 확대

- (창농) 현행 1,600명의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2천 명 수준까지)

* 사업 시행후 3년(18~20년) 평균 순수 신규 유입자(기존 경력자 제외) 규모는 56% 수준으로,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정책 효과(연간 1천 명 이상 신규 유입)(마상진 외 2017)를 위해서는 2천 명 수준으로 사업 규모 확대 필요

- (창어) 현행 200명의 청년어촌지원 사업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240명 수준까지)

* 연간 귀어업인 중 40세 미만이 약 200명 수준이고, 이들 중 약 40%에 해당하는 80명이 청년어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요건충족) 함을 감안할 때 240명(1~3년차까지) 수준으로 사업 규모 확대 필요

○ 사업 대상자 조정 및 지급 연한 연장 검토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개발시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 유럽, 프랑스의 경우 영농경력 5년까지 지급

* 일본 농업차세대인재 투자자금: 5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 유럽 청년농 직불 및 프랑스 청년농 취농보조: 40세 미만 영농경력 5년 이하

-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인 현재 정책 대상을 영농경력 5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지급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연령 상한은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인가, 대신에 영농경력 3년을 5년까지 확대할 것인가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나, 연령 상한은 40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녀 출산 능력과 더불어 한세대(30년) 정도 활발히 영농에 종사하는 미래 인재의 관점에서 청년농 연령 상한을 고려해야 함¹⁾. 40세 이상 지급 연령 상향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하고, 중앙 정부에서는 40세 미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 청년 후계인력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목적으로 198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을 3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지만, 이후 사업대상이 부족해지자 점차 나이 상한을 높여 최근에선 50세 미만으로 조정되어, 청년 후계농업인력 확보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무색해짐.

- 사업 대상자 선발 기준 보완, 정착 지역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도입 등에 대한 장기적 검토 필요
 - 선별 지원 방식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전원에 대해 지원 후 사후관리 과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고려
 -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매년 1,600명 선발) 탈락자 : ('18) 3,564명 → ('19) 1,381명 → ('20) 1,434명
 -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18년 100명, '19년 이후 200명 선발) 탈락자 : ('18) 24명 → ('19) 35명 → ('20) 58명
 - 동·읍 지역에 정착한 청년보다 고령화가 더 심각한 면 지역 또는 원격지에 정착한 청년들에게 추가 인센티브 부여 검토
 - * 프랑스 청년취농자 보조 정책의 경우 정착지유형(평지, 조건 불리, 산악지)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및 지역사회 역할 강화
 -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개인의 단순한 정착 지원금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취지*와 더불어 농어촌 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기초 소양교육 및 관련 사업**이 강화되어야 함
 - *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타 분야 전례가 없는 공공정책
 - ** 청년 농어업인 농어촌 사회기여 관련 부업활동(전략4 참조) 지원

□ 우수 후계농·어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규모 확대(중양)

-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영농·영어 경력 10년 이하자에 창업 자금에 대해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최대 3억원 융자지원 중
 - 최근 융자 조건이 개선(거치기간 3년 7년 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되었지만, 여전히 원금 상환시점 도래시 청년농어인의 경제적 부담이 큼
 - ** 프랑스 청년 취농 저리 융자금(MTS-JA) 조건: 융자액 상한은 없고 이자액 상한(지역 차등 11,800~22,000유로)이 있음. 상환기간 최장 15년, 이율 1%(조건 불리)~2.5%(평지)
 - *** 일본 청년농 취농자금: 무이자대출

- 우수 후계농·어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종료자 후속 지원 차원에서 후계농 선정 후 5년 이상 영농 종사중인 자를 대상으로 농업 기반 조성 및 운영 자금 지원(최대 2억원,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 규모를 현행(2020년) 250명에서 2025년 500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고려
 - 우수수산업경영인의 경우 운영 자금 지원 규모를 현행 20명에서 2025년까지 50명까지 점차적으로 확대 고려

□ 농업계 대학을 통한 창농인력 육성 기능 확대(중앙, 지방)

- 농업계 대학 중에 5개 대학*을 선정하여 현장중심 농업교육**으로 취창업 역량을 갖춘 농업전문인력 육성 중(2019년 59억원 지원)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연암대

** 기존 전공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영농창업특별과정을 함께 이수하도록 함.
영농창업특별과정은 학점이 인정되며 졸업학점의 30~40% 수준으로 편성하되, 특성화 과정 중 40% 이상을 영농창업 실무교과로 편성·운영하고, 실습 비중은 50% 이상으로 구성됨. 농업계 대학 3~4학년은 실습학기제(320시간 이상)로 운영하도록 함

- 지자체단위 청년농어업인 육성계획의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농업계 대학의 청년농 육성기능 강화
 - 현재 영농창업특성화대학 5개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지역단위 농업인력수요와 연계하여 농업계 대학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농업유관기관의 협력과 투자를 촉진
- 한국농수산대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실습시설 확충, 장기현장실습개선, 졸업생 정착지원 등의 제반 노력 지속

- 최근 KREI(2020) 평가결과, 한국농수산대학의 경우 졸업생들이 높은 영농종사율(2019년 현재 84.0%)과 더불어 경영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실습 및 제반시설 부족, 전임교원 및 교육지원 인력 부족,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 미흡, 창업농·어업인 지원 및 졸업생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됨

□ 농어업·농어촌 소양 교육 강화 및 농촌 체험 기회 확대(중앙[농식품부, 교육부], 지방)

- 초·중등학생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농어업 교양교육 차원의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각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농어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농어업정책에 대한 지지자를 확보하고, 나아가 잠재적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을 확보
 - 대국민 농어업 소양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교육분야별 담당 기관들의 전문성 강화
 - 초·중·고 교과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체계적 농어업 교양교육 체계를 갖추고, 개별기관에서 진행되는 관련 교육(식생활 교육, 학교텃밭, 농어촌인성학교, 농촌교육농장 등)을 전문화, 체계화
 - 학생 4-H와 같은 청소년 학생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농어업·농어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단기적으로 숙소와 일을 제공하여 농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를 제공
- *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보기 : 귀농어·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이 전남 지역 농어촌에 5일에서 60일간 살아보며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게 함

□ 정착단계별 청년 취·창업 정책 체계화(중양)

-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정책을 정착 단계별로 정책 목적, 대상, 사업, 관련 주체 등을 체계화하고 관련 정책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중앙정부의 청년 농어업인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단계별 정책사업 추진 주체(농정원, 농촌진흥기관, 농협, 농어촌공사,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청년농어업단체 등)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청년희망위원회('19~'20)(임시기구)와 같은 청년 정책 협의기구 상설화 및 범부처(국무총리 산하) 또는 국회 차원에서 농산어촌 청년 취·창업 활성화 대책 조직 설치 등
- 정착 단계별(예비기→준비기→창농어초기→정착기)* 정책사업간 방향성 공유하고, 상호 연계성 강화 및 신규 사업 지속적 발굴

- 예비기(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기본 소양 함양) : 학생 4H, 농어촌 희망재단의 농업후계인력장학금, 식생활교육, 학교텃밭, 농어촌인성학교, 농촌교육농장 등의 사업간 연계 및 방향성 공유. 대학생 농업 동아리지원, 농어촌 단기체류지원 등 신규 사업 추진
- 준비기(농어업을 전문적으로 준비: 과정에 따라 최장 4년~최소 1년) : 농업계 학교를 통한 준비교육(미래농고, 영농창업특성화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농어촌 희망재단의 청년 창업농 육성장학금, 공대-농대 협업교육), 사회교육을 통한 준비과정(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농업법인 인턴 및 전문인력채용, 경영실습농장)의 연계 (학교교육 → 취·창업, 사회교육→취·창업, 학교교육→사회교육→취·창업) 및 창업 농 준비 교육과정, 청년 농어업인 영농어기반 마련 개인개발계좌 등 신설
- 창농어초기(농어업 창업후 5년 이하 기간): 청년 취농어 정착지원사업,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2030 농지은행,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강소농교육, 후계농 컨설팅 등의 기존 사업간 연계와 경영승계, 마을영농, 공동창농 등의 사업 신설 추진
- 정착기(중견 농어업인으로 농어촌 정착) : 우수 후계농 추가지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농업법인화 지원 등의 기존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청년농 농지유동화 지원 등의 사업 신설 추진

- 정착단계별 청년 농어업인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 보강
- 청년 취창업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정착단계별 청년 농어업인 지원 정책사업 체계화

구분	예비기	준비기 (최장4년~최소1년)	창농어 초기 (시작~5년)	정착기 (6~10년)
목적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기본소양	농어업 분야 취창업 준비	농어업 분야 창업	중견 농어업인으로 농어촌 정착
대상	일반 학생	농·어업계 학생 청년 귀농 준비자	영농경력 5년 이하	영농경력 10년 미만
사업	기 존	·학생4H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미래농고, 수산계 고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공대-농대 협업 교육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 고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사업 ·후계농·어업경영인육성 ·2030 농지은행 ·귀농창업활성화지원 ·후계농컨설팅 ·(농기계 임대사업) ·농어촌 사회기여 활동 지원
		·식생활교육 ·학교텃밭 ·농어촌인성학교 ·농촌교육농장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농업법인 인턴(취업지원) ·농업경영체전문인력 채용지원 ·경영실습농장	·우수후계농·어업인 추가지원 ·농업법인화 지원 ·(농업인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품목특화전문교육)
	신 규	·대학생 농어업 동아리지원 ·농어촌 단기체 류지원	·창업농 준비 교육과정	·경영승계 지원 ·마을영농 지원 ·공동창농 지원 ·공동체 지원 창농
		농발계획, 농촌협약 (지자체 단위 청년농어업인 육성계획, 거버넌스, 통합지원조직)		
주요 관련 주체	농·수산계학교, 농촌진흥기관, 4H, 농정원	농·수산계학교, 귀농교육기관, 농촌진흥기관, 농업법인, 농정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농촌진흥기관, 농정원 농협, 농어촌공사, 농업법인, 농민단체, 수협, 어민단체	

*()안은 기존 농업인대상 사업

□ 지자체 청년농어업인 육성계획 수립 내실화(중앙)

- 지자체별 농어가 고령화 실태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할 것인지, 누가 관련 책무를 질 것이고, 어떤 주체들이 참여하여(거버넌스)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함
- 청년농어업인 육성목표 설정
 - 예) 향후 10년간 행정리당 1명*의 청년농 유입 배치를 통해 농어가 고령화, 인구감소에 대응하도록 함
 - * 합천군 368개 행정리: 연간 40명 필요 → 10년간 400명 육성
 - 양양군 124개 행정리: 연간 12명 필요 → 10년간 120명 육성
- 농발계획·어촌계획 등 농어업, 농어촌 개발 기본계획에 청년 농어업인 육성계획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유도
 - * 농촌협약: 농식품부가 '20부터 지자체와 농촌개발에 대한 중장기 개발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 지자체별 청년농어업인 통합지원조직 운영(지방)

- 영농어 기술 습득, 기반 마련, 판로개척, 주거지 마련 및 마을 정착 등 정착 초기 극복해야할 사항들을 지자체별로 통합적으로 밀착 지원하는 전담조직 운영
- 기초 지자체 '원스톱 창농어 지원조직'을 운영. 농어업회의소 등 지역 농어민 단체 주도하에 개방형 공무원제를 활용하여 민간 전담자를 채용하고 지역 내 유관 조직(농정부서, 농협,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선도농, 농업법인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구성
-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 발굴
 - * 전북의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청년 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청년창업농 주거환경개선 지원'

- 중앙정부 농어업분야 청년 취·창업 정책과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관련 정책을 정착 단계(예비기→준비기→창농어초기→정착기)별로 관련 정책사업 플로우차트(Flow Chart)를 작성·제시하고 단계별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

정착단계별 관련 정책사업 플로우차트 작성 사례(충남 홍성군)



자료: 마을연구소 일소공도(2020) 충남 홍성군 사례

- 지역특성에 맞게 창농어 유형별(가구내 승계, 사회적 승계, 법인취업후 창농어, 마을 창농어, 공동 창농어 등) 기술, 자금, 농지,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

□ 청년 참여형 마을영농어 지원(지방)

- 마을 단위*로 고령 및 은퇴농어민들의 유휴 농지, 시설, 장비를 청년농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년이 주도하고 기성세대 농어업인이 투자하는 세대 융합형 농어업·농어촌 추진
 - 경북의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같은 유형의 사업을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적용
 - 청년 : 청년이 사업을 구상하고 리더 또는 핵심적 역할
 - 고령자 : 고령으로 지속적인 농어업 기반유지가 어려운 경우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기반(토지, 시설, 기계 등)을 청년이 활용하도록 제공
- 농어업생산 뿐 아니라 가공, 체험관광, 유통, 6차산업 등 다양한 공동체 소득원을 발굴하고, 청년 영농어 정착지원 등 청년 창농어 육성 시책을 연계 지원하여 정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함
 -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현장 컨설팅과 코칭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함

□ 청년 어촌계정착지원 사업(중앙, 지방)

-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청년 계원의 유입을 촉진한 어촌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어촌계원 자격을 젊은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고령의 어업인에 대해 경영이양 직불금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하고, 이와 연계하여 경영이양 직불제를 통해 어촌계에 가입하는 경우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완화 추진

- 청년들의 어촌계 가입시 어촌계가 가입비 등의 과도한 가입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멘토(어촌계원)-멘티(청년)를 활용해 청년의 어업기술 및 어촌문화 조기 습득 지원
- * 충남은 2016년부터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사업’을 실시하여 2019년까지 신규 계원 416명 증가.
- 청년 유입을 활성화한 어촌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사업(어촌뉴딜 300, 어촌체험마을 등)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 청년 농어업인 농어촌 사회기여 활동 지원(중앙, 지방)

- 청년세대는 농어촌 정착 초기, 농어업에 전업으로 종사해서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농어촌의 대다수 마을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가 부족함
- 청년 농어업인이 농어촌의 지역사회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서비스 등 제공시 지원 검토
 - * 아일랜드의 농촌사회보장프로그램(RSS) 사업내용 : 농어촌 마을 시설, 도로 유지 보수 및 개선, 노인층과 비곤층을 위한 에너지 절약, 미취학 아동 및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 수준의 케어, 시골장터 운영 관련 업무, 지역사회의 행정 및 서류작업 지원 등
- 우선적으로는 중앙부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 청년들 참여 활성화 : 농어촌의 경우 청년층 범위를 40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해당사업도 확대
예) 환경부 ‘환경지킴이’,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 농업분야

○ 농업계 학교를 통한 예비 청년농 육성 사업

- 농고(18개교), 농대(15개교)에 대하여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농산업분야 진출 촉진 유도(2019년 68억원 지원)
- 미래농업선도고(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 현장중심 농업 교육으로 취창업 역량을 갖춘 농업전문인력 육성(2019년 97억원 지원)
- 한국농수산대학을 통해 정예 농업인력 육성(정원 550명, 2019년 예산 545억원)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업계 대학 재학생에게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부로 장학금* 등을 지급

* 매학기 등록금 + 학업장려금 200만원(년간 500명, 2019년 22.5억원)

- 공대-농대 협업 융복합 우수인재 양성 교육: 공대 등 타분야 기술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농산업 분야로 유입하여 융복합 인재로 양성

○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장에서 6개월간 장기 체류하면서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 실습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영농정착지원금* 및 관련사업** 대상자에 포함하여 정착지원

* 연간 1,600명, 월 100~80만원을 3년간 지원

** 맞춤형 농지 지원, 후계농 귀농 자금 지원, 경영실습임대농장, 컨설팅, 귀농인의 집 등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팜에 창업 또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 교육기간 20개월(이론 150시간, 현장실습 6개월, 경영실습교육 12개월), 연간 100여명

○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농업법인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연간 600만원(6개월)까지 지원

○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체별 최대 1명*(연차에 따라 월 80~180만원), 3년차까지 지원

* 농고·농대 채용 또는 농촌 거주 전문인력 채용시 1명 추가 채용지원 가능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농촌진흥청)
 - 신규 농업인이 영농기술, 품질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선도 농가에서 실습 교육 지원(월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 지원)
-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 (농촌진흥청)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전문가 컨설팅 지원(3회/인)
-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진흥청)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수료자 등에게 창업교육 및 창업 실행비 (10백만원/인)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 창업형 후계농(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후계농(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 농가(연간 1,200명)에 세대당 최대 3억원 창농 자금 융자지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한국농어촌공사)
 - 영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만20~39세)을 대상으로 농지를 최우선으로 지원(농어촌공사 5년이상 임대, 매년 임차료 상환)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촌진흥청)
 - 청년농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신기술, ICT활용, 벤처, 창업, 가공·관광 등)에 개소당 50백만원(자부담 10%)

□ 어업분야

- 수산계고교 대상 실습장비 지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목적 어업실습선**을 활용한 승선실습 확대로 간부 어선원 양성

* 전체 수산계고교(9개교) 대상 공통 교육프로그램(승선훈련·취업연계 현장실습 등) 및 고교별 자체 교육프로그램(자격증 취득 등) 등 지원('19년 28억원)

** 한미르호, 1,520톤급, 건조기간 3년('15~'18, 3327억), 승선인원 83명, 해양수산연수원 운영

- 현장중심 어업 기술교육 지원 및 귀어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19. 1개소 → ' 20. 4개소) 운영
 - 귀어학교 운영) : 지역 특성에 맞는 업종별 전문교육(심화이론, 현장실습 등)은 '귀어학교' 에서 전담하고, '종합센터 '는 기초이론교육 과정 운영
 - 귀어학교가 없는 지역은 '귀어귀촌지원센터' 에서 전문교육 수행
- 귀어귀촌 희망자(특히 청년층)에 대한 어업창업 지원
 - 귀어 창업·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어업인은 별도 영어정착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과 어촌정착 유도
 - * ('19) 500 → ('20) 1,000억원 / ** 어업 3년 이내, 40세 이하, 최대 월1백만원(최장 3년)
 - 양식면허 심사·평가제* 시행을 통한 신규인력 진입장벽 완화
 - * 부실관리 어장에 대한 재면허를 제한하여 양식업자의 책임경영 및 신규인력 참여 유도

미래세대를 위한 농어업 분야 교양 교육 관련 주요 활동

- 4-H : 4H(知德勞體)을 생활화 함으로써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토록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 운동. 1945년 농촌청소년구락부로 시작. 한국4-H본부(korea4-h.or.kr)
- 식생활교육 :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2009)에 의한 교육
 -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식생활교육박람회 개최, 식생활교육기관 61개소, 우수농어촌식생활 체험공간 246개소 운영
- 학교텃밭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 진행. 특·광역시 초등학교의 10% 정도 180여개소에서 배움텃밭, 학교농장, 학교정원, 교육농장, 생태텃밭, 스쿨가든, 학교학습원, 스쿨팜(school farm), 산림텃밭 등 다양하게 조성

- 농어촌 인성학교: 농식품부와교육부(2012)가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인성학교'를 공동 지정·관리하기로 업무협약(MOU) 체결. 청소년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정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마을권역에서 관련 활동 진행. 전국 119개 마을과 권역이 지정 운영 (www.ruralschool.co.kr)
- 농촌교육농장: 농촌진흥청(2006)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를 조성. 단순 1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농장 운영. 사)한국교육농장협회 (happyfarm.or.kr) 150개소 운영중
- 이밖에 농촌유학, 학교숲운동 등이 있음

자료: 마상진(2019). 미래세대와 함께 나누는 미래 농업교육(발표자료)

1. 외국 사례

□ EU

- EU 청년 직불(Young Farmer Direct Payment): 공동농업정책으로 40세 미만, 5년 이하 경력 청년농에게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 지급(기존 직불금에 25% 추가, 최대 경지 면적 90ha)

유럽연합 회원국별 청년 농업인 직불금 지급 방식

국가	전체 직불금 예산에서 청년 농업인 직불금 예산 비율	1헥타르당 단가 기준(유로)				최대 면적 (ha)	교육 및 연수 등 추가 자격 요건 포함 여부	기본직불금 예산 활용 청년 및 신규 농업인 지원
		국내 직불금 평균 금액의 25%	지급 대상자가 받는 직불금 평균 금액의 25%	기본 직불금 고정 금액의 25%	단일지역 직불금 고정 금액의 25%			
벨기에 플란더스	1-2%	○				90	○	○
벨기에 왈루니아	1-2%	○				90	○	
불가리아	1% 미만				○	30	○	
체코	1% 미만				○	90		
덴마크	1% 미만	○				90		
독일	1-2%			○		90		
에스토니아	1% 미만				○	39		
아일랜드	2%	○				50	○	○
그리스	2%		○			25		
스페인	2%		○			90	○	○
프랑스	1-2%	○				34	○	
크로아티아	2%			○		25	○	
이탈리아	1-2%		○			90		
키프로스	1% 미만	○				90		
라트비아	1-2%	○				90		
리투아니아	1-2%	○				90		
룩셈부르크	1-2%					일시금		
헝가리	1% 미만	○				90		
몰타	1% 미만		○			90		
네덜란드	2%	○				90		
오스트리아	2%	○				40	○	
폴란드	1-2%	○				50		
포르투갈	2%			○		90	○	○
루마니아	1% 미만				○	60		
슬로베니아	1-2%	○				90		

슬로바키아	1% 미만	○				28	○	
핀란드	1-2%	○				90		
스웨덴	1-2%	○				90		
잉글랜드	1-2%		○			90		
북아일랜드	1-2%	○				90	○	○
스코틀랜드	1-2%		○			90		
웨일스	1-2% 以下			○		25		

자료: 이정해(2018)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신규취농 모형 제안²⁾

- 경력 사다리를 통한 취농(Career-ladder farming) : 농업법인을 통해 영농에 단계적으로 진입하는 방식(뉴질랜드 낙농 분야에서 적용됨). 청년농이 농장에 직원 또는 관리자로 취직하여 나중에 계약직 낙농업자로서 자신은 오직 노동력만 제공하고 소와 같은 나머지 자산은 농장주가 제공함. 임금은 사전에 결정된 우유 매출액 또는 수익의 일정 비율로 받고, 장비, 소 등 자신이 가져가는 투입재에 따라 보수가 달라짐. 경력의 마지막 단계는 스스로가 농장주가 되는 것임
- 계약 농업(contract farming) : 기존농이 자기 농업을 유지하며, 영농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농에 점차적으로 위탁을 늘려가는 방식임. 주로 계승자가 없는 고령농이 점차 영농에서 물러나는 방식임. 청년농에게 농지 없이도 농업에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청년농은 농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농기계와 같은 영농 자원을 축적함. 고령농은 영농 작업을 전부 위탁하고 사전에 결정한 수확의 일부로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음
- 청년-장년 파트너십 농업(Junior-Senior-Partnerships): 청년농과 자격있고 노동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자기 농장을 이어갈 사람을 구하는 중견 농업인이 협력하는 진입 모델임. 신규 인력은 직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나중에 투입량과 산출량의 몫을 규정하여 상호 파트너가 될 수 있음. 특히 토지 가격과 임차료가 높고 기존 농업인이 자신의 농장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경우 상당한 이점이 있음
- 창농 인큐베이팅(Incubator-supported start-up) : 청년이 영농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체나 조직(인큐베이터)가 일반적으로 사무 공간, 계획, 보조금, 재정 및 마케팅 조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본과 농지를 제공함. 공적인 지역당국이 이 역할을 담당할 수 도 있고, NGO나 기업체도 할 수 있음. 프랑스의 Réseau National des Espaces Tests Agricoles (RENETA)는 자신의 생각을 실현해 보려는 신규인력에 토지를 제공하는 조직과 프로젝트를 지원함. 이를 통해 실패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한정시킴

- 크라우드펀딩 농업(Crowd funding) 농업 : 은행이나 공식적 대부 기관이 아닌 일반 대중을 통해 농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받아 취농하는 방식임. 신규 취농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동시에 자금 제공자가 소비자가 된다면 시장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자금 조달 방법임. 크라우드 펀딩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통 인터넷을 통해 조직됨
- 공동체보조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 공동체 기반의 재정/마케팅 영농 모델로 연초에 농장경영주가 생산 계획을 세우고, 생산 비용을 계산하고, 소비자 공동체가 미리 정해진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이후 농산물 전체를 구입함. 지불비용은 참여하는 소비자의 개인적 필요와 경제적 형편에 좌우되며, 전체 생산 비용에 비례하여 계산됨. 공동체보조농업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는 농장의 생산 비용 전체를 부담하게 됨
- 공동농업(Share Farming) : 협동의 한 형태로 두 당사자가 공동 농업을 위해서 각자의 자원을 합치면서도 영농과 관련하여 각자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함. 보통 토지소유자가 토지, 건물, 설비를 제공하고, 경영자가 관리 지식, 노동력, 장비를 제공함. 투입재 비용은 동의된 비율로 부담하며, 모든 파트너가 사전에 결정된 최종 산출물의 몫을 가짐
- 협동조합 농업(Worker's cooperative) :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협동조합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과 지식을 기여하여 영농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여자는 반드시 공통의 비전과 일하고 팀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자료: EIP-AGRI Focus Group. 2016. New entrants into farming: lessons to foste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 프랑스

- 청년농 보조(DJA: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젊은 농업인의 영농 정착 및 조건불리지역이나 산간지역의 인구 유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농업인(40세 미만, 전문농업교육이수 등)에

2) 농업 신규인력에 관한 EIP 농업 초점 집단(EIP Agri Focus Group on New Entrants to Farming)에서 전세계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농업 신규인력을 모델을 제시.

대해 정착 수당, 영농개시 시에 용자, 세제 및 보험료 혜택, 농지 우선 취득 등을 지원

- 신규취농정보센터(PAI: Le Point Accueil Installation): 광역단위 농업회의소에서 신규 취농 상담 및 자기진단 서비스 제공함. 신규 취농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상담가가 자기진단조사지를 토대로 신규취농 희망자를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계획을 진행하도록 도움

프랑스의 신규 취농 지원 단계

- 신규취농정보센터(PAI: Le Point Accueil Installation)에서 상담 및 자기진단 서비스 제공
 - 신규취농과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상담가가 자기진단 조사지를 토대로 신규취농 희망자의 현재상황을 진단하고, 향후계획을 진행하도록 도움
- 맞춤형 전문화 계획(PPP: Le Plan de Professionnalisation Personnalisée) 작성
 - EU나 각국, 지방정부의 신규 취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PPP가 요구됨
 - 개인의 기술수준, 자기진단 결과에 따라 작성
 - 21시간의 의무교육 + 신규취농자가 희망하는 훈련, 인턴십 (주정부와 VIVEA 재단에서 훈련비 지급)
- 경영발전계획(PDE: Le Plan d'Entreprise) 작성
 - 향후 5년간 예비적 재정적 기술적 계획
 - 5년 시점에 최저 소득에 1~3배를 얻을 수 있어야 함
 - PPP와 더불어 주정부가 승인
- DJA 및 용자 지원 조건
 - 프랑스나 EU 국적 또는 취농 이후 5년간 프랑스에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비회원국민
 - Agricultural Baccalaureate + 주정부에 승인된 PPP
 - 주정부 인정 ODP
- ※ 의무이행사항
 - ODP에 따라 5년간 영농종사(지급 조건에 따라 1차 직업/ 2차 직업으로) - 장부 작성(5년)
 - 모든 농장시설은 환경보호 규정 준수(3년)
 - 보건, 위생, 동물복지 기준 충족(3년)

자료: 마상진 외 (2017)

□ 영국

- 스코트랜드 청년농 창업지원(Young Farmer Starter Farm Scheme): 신규 창농 청년(40세 이하)에게 창농 기반 마련을 위해 자금으로 4년간 7만 파운드 지원함
- 영국 농지 파트너십: 농지 소유자와 농지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간 협력을 나타내는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영국 신규 취농센터(UK Fresh Start Land Enterprise Centre)가 제안하여 추진. 농지 파트너십을 통해 계약 농업, 라이선스, 공동 농업, 전통적인 임차 및 장기 임차 등을 추진함

□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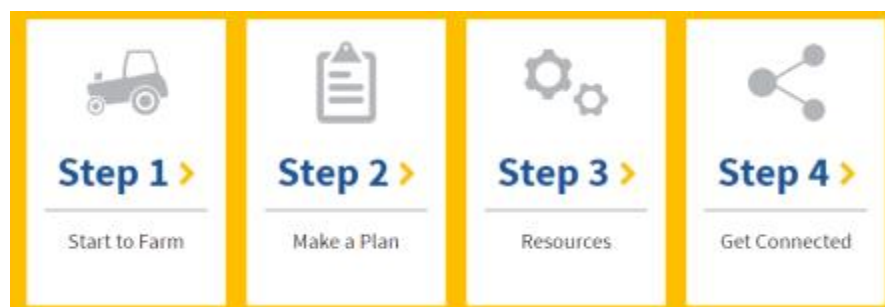
- 농지 이양서비스(Land Mobility Service):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아일랜드 3개 지역(Dairygold, Aurivo, Glanbia)에서 추진
 - 아일랜드 청년농업인협회(Macra na Feirme)가 사업 시행 주체이며, 아일랜드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업 관련 민간단체 등이 재정 지원
 - 농업을 포기하거나 농업 규모를 축소하려는 농가의 농지를 청년 및 신규 농업인이 이양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 시행
- * 주체인 아일랜드 청년 농업인협회는 농지를 제공하려는 사람과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중개하여 장기임대, 파트너십, 공동생산, 계약생산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 미국

- 농무부(USDA)의 단계별 체계적 취농 정보 제공
 - 1단계 Start to Farm(취농시 중요한 고려사항들 체크리스트 제공)
 - 2단계 Make a Plan(사업계획 작성 및 관련 지원 서비스 연결)

- 3단계 Resources for New Farmers(농지, 자본, 위기관리, 보험, 시장접근, 교육 및 컨설팅, 세금, 보건, 식품안전, 환경, 노동력 확보 및 농가 안전 등 분야별 전문 정보)
- 4단계 Get Connected (농무부 종합 서비스 센터, 농업통계서비스, 농촌지도서비스, 소상공인지원서비스, 농정 참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관련 정보 제공과 더불어 신규농업 연합회를 조직하여 선배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도 제공함

미국 농무부 신규 취농자 단계별 종합정보서비스 체계



자료: USDA

- 신규농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BFRIDA: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 미국 신규농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은(BFRIDA)는 2008 농업법 (Farm Bill)에 근거
 - 신규농의 저축과 정부의 재정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된 것으로 개별 농가가 3,000불 한도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이에 두 배에 해당하는 6,000불까지를 매칭으로 지원받아 총 9,000 불의 영농 자금으로 사용
 - 15개 주에 시범사업(pilot program)으로 추진
 -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재정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해당 펀드가 인출되기 전에 저축계획을 개발해야 함. 해당 펀드의 인출은 반드시 영농 관련 활동에 한정되어 있음

□ 일본

- 일본 농업차세대인재 투자자금(구 청년취농금부금) :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40세 미만 유입자를 두 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50세 미만 신규 취농자에게 정착 수당(준비형 2년, 경영개시형 5년)을 지급
- 일본 농업법인취업지원(농의 고용사업) : 신규 취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우선 취업해서 상당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인근 지역 토지를 취득하여 영농활동을 하게해 정착률을 높이는 사업
- 일본 농업경영승계 사업 : 농장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없는 농업인과 신규 취농 청년을 연결해 농장을 인수하도록 하는 사업
 - 신규 취농자와 경영이양할 농업인을 모집하여 1~2주 농장 사전체험 후, 양측 합의되면 농업기술과 경영승계 연수(6개월~2년)를 실시
 - 연수기간에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연수자에게는 매월 9만 7000엔, 농장에게는 연간 최고 12만 엔을 지원함.
- 일본 전국농업회의소의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 운영 : 취농을 3가지 유형(법인취업, 법인취업후 창업, 독립취농)으로 나눠 대응하며, 도부현 단위로도 신규취농상담센터를 운영

2. 국내 사례

-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 농식품부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40~45세 미만 창업농에게도 정착금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도모(50명, 월 80만원, 최대 3년 지원)

- 강원도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 강원도는 창업 장애요인(경영자금, 주택 등) 해소 및 경영체별 자율선택 사업을 지원함. 45세 이하 청년농 30명을 선정하여 생산·유통, 제조·가공, 체험·관광, 브랜드개발, 마케팅, 주택 임차 등에 인당 최대 3천만원 지원
- 경북 ‘청년 창농 활성화 정책’ : 2013년부터 2037년까지 청년 농업리더를 1만 명 양성(도내 자연마을당 1명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지역 농고 졸업생들의 영농 정착을 집중 지원하고, 농고 졸업 후 창농한 경우 3년간 연간 500만 원, 농지 장기임대, 경북대 특례입학(연 40명) 등을 지원

경북의 단계별 청년농 육성체계



자료: 마상진 외(2017)

- 경북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사업’ : 청년농업인이 주도하여 농촌마을의 고령농의 영농기반(시설, 농자재 포함)을 활용하여 생산, 가공, 판매, 체험 활동을 활성화(마을당 3억~5억원 지원)
 - 생산중심형 : 농산물 생산·판매가 공동체의 주소득원
 - 유통복합형 : 생산중심형에서 농산물 유통판매사업을 복합추진
 - 6차 산업형 : 농식품 유통, 가공, 체험·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 추진

3. 시사점

- 외국에서는 청년세대의 농어업 분야 유입은 중요한 현안으로, 높은 취농 진입장벽(농지, 장비, 자본, 기술)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청년의 농어업 정착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 단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또는 농민단체(농업회의소)가 주도하여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인 활동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담아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청년세대의 영농·영어 정착지원사업 시행 이후, 지역특색에 맞게 중앙정부 사업을 보완하는 지자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함
 - 중앙 정부, 광역 지자체 단위의 노력에 비해, 기초 지자체 단위의 노력은 아직까지 제한적임

참고 3

2020년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현황³⁾

○ 직접일자리: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 · 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임금 직접 지원)

-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참여 대상 중 청년층(20~34세)을 최소 50% 선발

연번	부처	세부사업	유형	청년참여 목표(%)
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사회봉사복지형	-
2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사회공헌활동지원)	사회봉사복지형	-
3	고용부	사회공헌활동지원(신중년경력형일자리)	소득보조형	
		업종별재해예방(사고성재해집중관리(공단) (고위험업종안전보건지킴이))	공공업무지원형	-
4	농림부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식품분야해외인턴십지원, 농업법인취업지원)	인턴형	80
5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OD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글로벌농업인재양성))	인턴형	100
6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사회봉사복지형	100
7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등록사립박물관전문인력지원)	인턴형	-
8	문체부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공공업무지원형	80
9	문체부	예술인력육성2(예술인력재교육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인턴형	55.7
10	문체부	전통스토리계승및활용(이야기할머니현장활동등)	사회봉사복지형	100
11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R&D)(출연연맞춤형인력 양성사업)	인턴형	-
12	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업무지원형	80
13	복지부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	사회봉사복지형	-

3) 고용노동부(2020)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재능활동형,대한노인회외사업)	소득보조형	-
14	복지부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소득보조형	-
15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지원	소득보조형	-
16	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	공공업무지원형	-
17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
18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공업무지원형	-
19	산림청	국제산림협력(해외산림인턴지원)	인턴형	-
20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도우미)	공공업무지원형	100
21	산림청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소득보조형	-
2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여성인턴)	인턴형	-
23	행자부	국가기록물정리	공공업무지원형	-
24	행자부	지역공동체일자리(지특)(마을기업,취약계층공공근로사업)	소득보조형	-
25	환경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하천쓰레기수거사업)	소득보조형	-
26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소득보조형	-
27	환경부	환경지킴이(1..자연환경안내원(정규직전환대상제외, 2.국립공원지킴이(재난구조대제외), 3.주민감시관리요원, 4.5대강환경지킴이)	소득보조형	-
28	농림부	농식품수출시장다변화(농식품청년해외개척단)	인턴형	-
29	복지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및일자리운영(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인턴형	100
30	특허청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지원(온라인위조상품재택 모니터링지원)	소득보조형	100
31	해수부	수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청년수출개척단)	인턴형	-
32	행자부	공공기관빅데이터활용청년인턴십운영(공공데이터개방 및이용활성화지원)	인턴형	100
33	행자부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책지원형,민간취업연계형)	인턴형	100

참고 4

제13차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운영위 검토의견	조치사항
농어업, 농어촌 농식품산업(유통 등)으로 체계화하여 청년들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음	본 안건은 농어업 분야를 다룬 보고서로 농어촌 분야를 다룰 때 농식품산업 추가 및 신규사업 제안도 검토하겠음
핵심포인트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20쪽 내외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를 4개의 핵심전략과 이에 따른 17개 세부추진과제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표> ‘핵심전략별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가하였으며, 연구용역보고서와 별도로 요약본을 6쪽으로 작성하였음
이행계획 수립을 고려하여 지방과 중앙의 구분, 해당 부처를 기재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는 지방과 중앙을 구분하고, 해당 부처를 기재하였음
<표> ‘장착단계별 청년 농어업인 지원 정책사업 체계화’에서 시기구분에 예비기, 준비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기재 요함	<표> ‘장착단계별 청년 농어업인 지원 정책사업 체계화’에 단계별 준비기간을 명시하였음
농지 관련 사항은 수요와 공급 실태를 통계 등 자료를 활용해 제시하고 농지공급이 필요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현장에서 농지 관련 기존 농업인과 청년들의 갈등이 심한데 갈등의 핵심이유를 조망하여 해결책 모색이 필요함	청년농을 위한 농지거래 활성화 방안을 제안으로 추가 하였으며, 갈등 관리는 청년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및 통합지원 조직에서 다룸. 농지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농지소분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자료인계 등 조치토록 하겠음 ※ 농식품부 의견조화결과 공식통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농수산대, 농정원 등 교육파트의 개선과제 추가 기술	교육관련 추진과제로서 ‘농업계 대학을 통한 창농인력 육성 기능 확대’를 추가 제시하였음
농수산대 졸업생의 현장 정착률이 낮는데 그 이유와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	농수산대 졸업생의 현장 정착률이 객관적으로 낮지는 않음. 다만, 현재보다 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농식품부가 작년 KREI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현장실습개선, 졸업생 관리체계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농업계 대학을 통한 창농인력 육성 기능 확대’ 부분에 제안함
경영승계 지원 제안은 바람직하며, 토지 등 자본의 이전, 상속세 등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심도 있게 다뤄주면 좋을 것임	경영승계의 활성화 등은 추진과제로 제시하여, 추진과제는 청년특위에서 담당할 계획이며, 상속세 등은 본문에 간략히 언급하였으며, 안건화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농어업분과에서 다룰 수 있도록 자료인계 등 조치토록 하겠음

참고 5

제14차 운영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의견	조치사항
○ 농어업분과위원회 공익직불 소분과 의제 중 ‘청년직불제’ 논의와 연계 업무 협의 필요	○ 협의한 결과 청년직불제가 구체화 전 단계 이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취농할 때 자금지원은 영농초기, 창농초기, 정착이후 한 번에 자금을 지원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현실에 맞게 지원이 필요 ○ 농지는 매도자가 농지은행을 통하여 매도할 때 양도세를 일정부분 감면해주는 제도가 필요하고, 매도된 농지는 청년 창농인이 매수하도록 함 ○ 반농반x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 하면서 필요한 교육, 문화, 보건, 복지, 환경, 안전 등을 제공하고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나 지자체 지원 명문화 ○ 농어가 승계시 상속세 감면이 필요 ○ 우수 후계농 추가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 좋은 사례인 일본의 농업경영 승계사업 참고	○ 현재도 후계농, 우수 후계농으로 창농초기, 정착이후로 나눠 지원중임. 우수 후계농 지원을 보다 확대하도록 본문에 반영 ○ 아래 승계와 더불어 농지에서 다루는 것이 나을 듯함 ○ 일부 언급하고 있으나, 연말 농촌 청년활성화 보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 ○ 현재도 감면_농지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 ○ 반영되어 있음
○ 29쪽, 박스 아래 서술 삭제: 굳이 필요한 내용이 아님 ○ 29쪽, 다기능 농정 -> 지속가능 농정 (농특위 12.3 문건의 공식표현) ○ 33쪽, 전략4는 농어촌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 ○ 37쪽 본 문건, 더 컴팩트하게 줄일 필요 - 가령, 40~43쪽 청년세대 유입실태, 설명이 장황=蛇足, 46쪽 박스 삭제; 47쪽 이하 4개 핵심전략, 17개 과제를 한 표로 정리(64쪽 표를 앞에 제시하는 것도 방법) ○ 49~64쪽 핵심 제안 중심으로 압축(문장을 줄이고 나눌 것, 박스 등은 삭제해도 무방) ○ 65쪽 이하 참고자료. 심의안건에 굳이 필요할지 의문. 전체 삭제 가능	○ 반영함 ○ 반영함 ○ 청년 농어업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 다루어도 됨 ○ 반영함 ○ 반영함 ○ 반영함

검토의견	조치사항
○ 농어촌 청년 취창업 활성화는 범국가·범부처 차원에서 공동대응체제가 되어야 함 - 범부처(국무총리 산하) 청년희망 농산어촌 취창업 대책위원회(감사부처는 농식품부/해수부 공동) - 국회 농해수위 산하에 농산어촌 청년 취창업 활성화 특별소위 ○ 청년세대 농산어촌 연계/진입/정착/일자리 활성화는 단지 ‘농산어촌’이 아니라 ‘지역소멸 극복’ ‘도시문제 해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 <농특위 TF-BH 비서관실-농식품부/해수부 주무부서> 간의 향후 3년간 비상대응 TF 운영을 통해 주무부처 정책예산, 부처간 정책예산 조정협력, 계획과 시행 및 점검평가와 성과관리 등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관리 사항이 되도록 집중적이고 통합 관리체계 긴급함	○ 59쪽 반영 ○ 농어촌 청년에서 다루도록 함
○ 전략4의 신규 사업이 내용, 기간, 예산, 관련부처를 명기한 실행 가능한 정책프로그램으로 보완	○ 관련부처 명기하였으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참고 6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검토의견	조치사항
2. 핵심전략별 세부추진과제(표) - 본문 내용 변경사항 반영	본문 내용 변경에 따른 세부추진과제(표) 내용 수정 - 개인개발계좌제도 삭제 - 전략4, 4개과제 → 3개 과제로 통합
‘영농 승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중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자 승계 방안 검토 예정	사회적 승계 해당 내용 수정
전문 지원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이전 설립 운영의 방향 선행하여 설정할 필요	‘지원기구’ → ‘지원조직’으로 수정
농지임대수탁은 재정투입 없이 농어촌공사 자체사업이므로 물량에서 제외할 필요	제외된 물량 반영하여 내용 수정
우리나라에는 아일랜드 청년농업인협회 처럼 대표성있는 단체가 없는 점 고려. 다만, 사업수행과정에서 청년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하여 농지은행 정책에 반영 중임	아일랜드 사례 내용 삭제.
기재부 보조사업특별점검(’20.5) 취업지원 사업 및 전문인력지원 사업 폐지(’21년 정부안 미반영)로 사업 확대 불가	농어업법인 취업사업 활성화 내용 수정
현재 지원중인 영농정착지원금과 중복우려 및 현금성 지원 추가 신중 검토 필요	청년농어업인 영농어기반 마련 개인개발계좌 제도 신설 내용 삭제
현재 추진중인 사업 활용	‘농업경영실습 농장’ → ‘임대농장’으로 수정
지원자격 변경은 사업성과 등 분석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	‘영농경력 규정 폐지’ 및 ‘지급연한(5년)’ 부분 내용 수정

검토의견	조 치 사 항
한정된 재원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영농 초기 청년농에게 가계·영농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나, 안건 취지를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사항으로 전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사항으로 내용 수정
지원조건 개선 추진 완료	‘우수 후계농 추가지원 사업 규모 확대(중앙)’으로 제목 수정
예산 및 사업현황 수정	농업계 대학 관련 예산 및 사업현황 내용 수정
대국민 농업관련 소양을 제고하되, 각 기관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관련 내용 수정
하단 박스 내용 중 본문내용에 맞게 보완	‘개인개발 계좌’ 관련내용 삭제
정착단계별 청년 농어업인 지원 정책사업 체계화(표) 본문 내용에 맞게 보완	‘개인개발 계좌’ 관련내용 삭제
‘농촌협약’은 중장기 계획을 근거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등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므로 기본계획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 필요. 또한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의 정주여건’의 정책목표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농촌협약’ 제도 도입 시 청년 농어업인 정책 가버넌스 및 자원조직의 통합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 혼선과 상충을 초래할 수 있어 지양할 필요	‘농촌협약’ → ‘어촌계획’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 수정
마을 또는 지역단위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	‘중앙,지방’ → ‘지방’으로 내용 수정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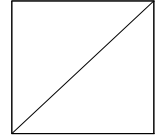
검토의견	조 치 사 항
청년 귀업업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등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을 통한 직접보조(100만원/월)를 지원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 개인개발계좌제도 삭제
청년 창농어 준비과정의 내용은 해양수산부 관련 사업 부재	'창농어' → '창농' 또는 '창업농'으로 수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및 확대 내용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반영	'(창농), (창어)'로 지원사업 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내용 수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조건 개선 시 후계어업경영인 지원 조건 개선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	해당 내용에 어업분야 반영
우수후계어업경영인의 사업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	수산업경영인 우수경영인 관련 세부 내용 보완
한국농수산대학 내 수산계열 학과(2개, 어류양식학과 및 수산생물양식학과) 등이 있으므로 어업인 포함되어야 타당	해당 내용에 어업분야 반영
정착단계별 청년 농어업인 지원 정책사업 총괄표에 어업분야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포함되어야 타당	어업분야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반영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만65세 이상 ~ 만75세 미만 어업인이 만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경우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토록 제도 시행예정('21.3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제도개선 계획내용 반영

<농촌진흥청>

검토의견	조 치 사 항
현재 추진중인 사업명칭으로 현행화	'선도농가 실습지원 사업' →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으로 내용 수정
창농어초기 추진사업 추가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내용 추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임성규 농어촌정책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41 E-mail : limnong@korea.kr

공 개



의안번호	본 제2020-4호	의 결 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20. 10. 13. (제 6 회)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김 영 재
제출 연월일	2020. 10. 13.

1. 의결주문

-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농특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 남북농림수산협력위원회('19.10.15~'20.10.14, 15명)를 구성·운영 중
- 농특위법 시행령 상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 1회만 연장 가능

시행령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7조(구성 및 운영 등) ① 특별위원의 임기는 각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 운영세칙 상 특별위원 임기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에 따르며,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시 특별위원 임기도 자동 연장
- UN 제재, 대북관계 경색 등으로 정부의 평화경제 구상과 연계된 농림수산부문 남북협력 성과가 미달성된 상황이며,
 - 코로나시대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로 새로운 안보상황에 더욱 긴밀한 협력(VIP '20년 광복절 경축사) 필요
 - 최근 정부의 대북협력 드라이브를 위한 통일·북한 관련 인사 조치로 대북사업 재개 및 탄력 기대에 따른 농업분야 뒷받침 필요

3. 주요내용

- (연장기간)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6개월('20.10.15~'21.4.14) 연장
 - 또한 그간 논의에 참여했던 특별위원의 임기도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맞춰 연장하여, 논의 체계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 필요

4. 참고사항

- 당연직부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 : '20.9.10.~9.15.

참고

남북농림수산업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성명	주요경력
김영훈 (위원장)	· 現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위원
강호상	· 現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산학협력교수 · 現 (사)농어업정책포럼 남북농어업산림협력특별위원장
김관호	· 現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前 통일부 교류협력정책 자문위원
김덕수	· 現 통일농수산 대표
김은영	· 現 CJ 미래경영연구원 부장 · 前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연구부 전문위원
김창현	· 現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문성종	· 現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 現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문영섭	· 現 (사)제주마썸 회장 · 前 제주적십자사 부회장
박경석	· 現 산림경영전략연구소 소장 · 前 국립산림과학원 북한산림연구실장
신명섭	· 現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 前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상임부회장/사무처장
오형완	· 現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식품진흥처장 · 前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장, 지속가능경영실장
이승돈	· 現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 前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임구수	· 現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남북수산업협력단장 · 前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사업개발실장
정연규	· 現 (사)한국양묘협회 회장
홍상영	· 現 우리민족서로돕기 사무총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임태호 농수산식품팀장
연락처	전 화 : 02-6260-1231 E-mail : limth@korea.kr

좋은농협위원회 운영 현황 및 계획(안)

2020. 10. 1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I. 좋은농협위원회 운영 개요	95
1. 구성 및 기능	
2. 운영 방향	
II. 추진 현황	96
1. 추진 경과	
2. 주요 추진 실적	
III. 전체회의 결과	103
1차~7차 회의	
IV. 향후 계획	106
1.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2.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3. 농협 자체혁신과제 제시 및 개선 권고	
4. 과제별 완결 계획	
[참 고] 1. 농협중앙회 자회사 관련 간담회 결과	
2. 좋은농협위원회 위원 명단	

I. 좋은농협위원회 운영 개요

1 구성 및 기능

- 구 성 : 특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19. 8. 21. 발족)
- 기 능
 -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특정 의제를 논의하고, 본 위원회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특별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등
 - 좋은농협위원회는 농협의 정체성 재정립,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협의 올바른 역할 등에 관한 주요 의제 논의
- 운영기간
 - '19. 8. 21. ~ '21. 2. 20.(농특위 5차 본회의에서 6개월 연장. 당초 '20. 8. 20)
 -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

2 운영 방향

- 농협개혁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상 및 혁신과제 제시
 - 농협의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발전방향 제시
 - 농협의 조직구조(조합원·조합·중앙회) 개혁을 위한 혁신과제 제시

II. 추진 현황

1. 추진 경과

구분	일자	내용
【2019년】 위원회 발족 및 1차 전체회의	8.21	- 위원회 운영계획, 소분과장 임명, 운영위 구성 -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협으로의 혁신
2차 전체회의	9.5	-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
3차 전체회의	11.21	- 농협 자체혁신 1차 과제 확정 - 농협 미래비전 논의과제 발표
【2020년】 4차 전체회의	4.28	- 2020년 위원회 사업계획, 농협개혁과제연구 및 자체혁신과제 논의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5차 전체회의	7.2	- 농협 자체혁신 2차 과제 확정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공개포럼	7.2	- 착수보고회 : 농협 지속가능 미래발전 위한 조직구조 개혁과제 연구 - 공개포럼 : 농축협의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 방안은?
농협중앙회장 및 농협경제지주대표 면담	7.2	- 참석 : 운영위원 - 내용 : 위원회와 농협의 적극적 협력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 도모
농협중앙회 자회사 관련 간담회	7.20	- 참석 : 강기갑 위원장, 이호중 위원 - 내용 : 농협 계통구매에 따른 바이오차(토양개량제) 가격 급등 민원사례 논의
6차 전체회의 및 2차 공개포럼	8.6	- 회의결과 :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수립에 위원회 참여 결정(세부계획 운영위원회 위임) - 공개포럼 : 농협 지주회사 체제 점검(수립 8년, 완전이관 3년)
농식품부 실무협의회(화상회의)	8.31	- 참석 : 운영위원 - 내용 : 농협법개정(중앙회장 직선제) 선결과제 관련 실무협의
7차 전체회의 및 중간보고회, 3차 포럼(화상회의)	9.3	- 회의결과 : 농식품부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중간보고회 - 공개포럼 : 조합원제도 개선 방안

※ 코로나19로 4차 전체회의 3회 취소(2.26, 3.24, 4.7)

2. 주요 추진 실적

1 농협 자체혁신과제 마련

□ 1차 농협 자체혁신과제 확정('19.11.21. 좋은농협위원회 3차 회의 의결)

□ 도시농협 판매사업 활성화

- 경제사업 이행강제제도 개선
- 조합 경제사업 평가제도 개선
- 도시지역 오프라인 매장 확대 위한 제도 개선
- 도시농협 소비자 조직화 방안 강구

□ 금융지주 자회사와 조합간 수위탁사업 개선

- 농협 카드사업의 투명한 운영공개 및 조합과의 약정시스템 개선
- 금융지주 모든 자회사와 조합간 수위탁사업의 공정성여부 점검

□ 계통구매사업의 개선*

- 계통구매 세부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시스템 개선

□ 알기쉬운 예결산서 작성 및 교육 개선

□ 농협경제사업활성화계획(2021년 이후) 수립

□ 중앙회를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상향식 조직체계로 개편

* 7.20 농협중앙회 자회사 관련 간담회 개최(참고1)

□ 2차 농협 자체혁신과제 확정('20.7.2. 좋은농협위원회 5차 회의 의결)

□ 조합원

-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 지도·집행 강화
- 신규 조합원 확보 위해 과도한 출자요구 금지

□ 조합

- 이사회 및 대의원회 선출제도 개선(품목이사 도입 등)
- 임원자격 기준 개선
- 조합 및 중앙회 사업계획 수립 방식 개선
-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위한 농협의 역할 강화
- 지도사업 개선방안 마련

☐ 중앙회

- 중앙회(지주회사)-조합간 경합 방지 등 상생발전 위한 제도 개선
- 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 제도 개선
- 교육프로그램 혁신(교재, 기법 등) 및 교육의무화 등 교육사업 개선
- 농자재 생산기반 구축 위한 자회사 체제 개선

☐ 기타

- 조합원 실태조사 시 농협이 조합원이 농지원부 직접 발급 불편 해소
- 농협가공식품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 및 수입농산물 판매 금지

2 정책연구용역 추진

정책연구용역 개요

☐ 과업명 : 농협 지속가능 미래발전 위한 조직구조 개혁과제 연구

☐ 과업목적

- 농협의 미래상과 나아갈 방향 제시 : 농협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지향과 모습
- 농협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위한 개혁과제 도출 : 농협의 조직구조 (조합원, 조합, 조합간, 중앙회 측면)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과제 도출

☐ 과업기간 및 소요예산 : 6월 ~ 11월 / 63백만원

☐ 용역기관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과업내용

- 농협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제시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상 및 지속가능 발전 위한 방향 제시

- 조합원 제도개선안
 - 조합원 자격기준 개선방안
 - 경제사업 확대 위한 약정조합원 활성화방안
 - 청년·여성·귀농자 등 신규조합원 확보방안
- 조합 조직구조 개선 위한 제도개선안
 - 조합 유형별 발전 위한 제도개선방안
 - 조합 지배구조(조합장-상임이사-이·감사 등) 개선방안
 - 조합 임원제도(권한, 선출방식, 자격 등) 개선방안
- 조합간 협동연대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안
 - 품목연합회 활성화방안(해외사례 분석 포함)
 - 지역연합회 타당성검토
 - 타 생산조직 및 사회경제조직과 상생·협력방안
- 농협중앙회 조직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안
 - 지주회사체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지주회사체제 종합점검 및 개선안
 - 연합회체제 타당성 검토(쟁점, 과제)
 - 이사회 및 감사기구 개선방안 검토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상정 안건 정리
 - 좋은농협위원회 회의를 통한 연구진행과정과 결과 검증, 본위원회 안건 정리 등

용역 추진 경과

- ☐ 착수보고회 및 1차 공개포럼 개최(7.2)
 - 주제 : 농·축협의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개선 방안은?
- ☐ 2차 공개포럼 개최(8.6)
 - 주제 : 농협 경제지주 체제 점검(설립 8년, 완전이관 3년)
- ☐ 중간보고회 및 3차 포럼 개최(9.3)
 - 주제 : 조합원제도 개선 방안

3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추진

농협선거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선거운동의 범위 제약

- 예비선거제도 미도입으로 조합장 선거는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로 시행
- 후보자 본인 외에 선거운동이 불가하며, 6가지 방법(어깨띠, 전화, 문자, 조합홈페이지 이용 등)에 국한된 선거운동만 가능

□ 유권자의 알권리 제한

-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상 ‘후보자 합동연설회’ 등이 허용되지 않아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약
- 이에 따라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되며, 매니페스토 운동 역시 제약(후보자 참여 공명선거실천서약 금지)

□ 중앙회장 선거 대의원 간선제 시행

- 소수 대의원조합장만 참여하는 선거이므로 대의원이 아닌 회원조합의 선거권을 제한
- 전체 회원조합장의 의사 미반영으로 중앙회장의 대표성 미흡
- 소수 대의원조합장만이 선출함에 따라 선거과열 현상 및 정치권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

선거제도 주요 개선 방안[‘19.9.24. 농특위 2차 본회의 가결]

□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

-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 선거후보자 외에 배우자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 허용

- 인터넷,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확대
- 후보자에게 선거인 전화번호 제공근거 신설

☐ 유권자의 알권리 강화

- 후보자 대담·토론회 허용
- 조합 공개행사 시 정책발표 허용

☐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 전체 회원조합장의 의사 미반영에 따른 중앙회장의 대표성 문제, 전체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개정

☐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유보”

- 연임제 허용에 따른 우려(무리한 연임추진, 권한 남용, 비리 발생 등)가 큰 만큼 중앙회장의 연임제 도입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

추진 경과

☐ 농특위

- ‘19.9.5 좋은농협위원회 2차 전체회의 : 선거제도 개선안 의결
- ‘19.9.24 농특위 2차 본회의 : 선거제도 개선안 의결
- ‘20.4.28 좋은농협위원회 4차 전체회의 : 21대 국회 개원 시 조속히 추진 결의

☐ 시민사회

- ‘19.9.5 국회 토론회(농어업정책포럼, 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운동본부 등)
- ‘19.11.4 국회 기자회견 및 농해수위·행안위 의원 면담(농협조합장 정명회, 좋은농협운동본부, 농어업정책포럼, 김현권 국회의원 등)

☐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19.11.18.)

- 농식품부는 선결과제(부가의결권 도입, 중앙회장 권한집중 해소 등)를 전제로 직선제 전환 수용 입장

- 대부분 의원들은 직선제에 찬성 입장. 다만, 부가의결권 적용과 관련 위탁선거법 충돌조항* 개정 없는 법안 의결에 대해 여·야 입장 차이
 - * (김현권, 오영훈의원 등) 1조합 1표로 개정안 의결 후, 위탁선거법 사후 개정 (경대수, 이만희의원 등) 부가의결권 근거규정 없는 개정안 발의는 불가
- 농식품부는 1조합 1표로 직선제를 도입하는 안을 수용하되, 부칙으로 부가의결권 등 선결과제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
 - 여당은 해당 방안을 수용하였으나, 야당은 불수용, 회기 경과로 개정안 폐기

□ ‘20년 법개정 추진사항

- 농협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6.11)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1조합 1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7.14)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 개최
 -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 입법과제 발표 : (7.8)* 이호중 좋은농협위원회 위원
 - * 21대 국회 농정교제 토론회: (주최)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국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11명 위원
 - 농협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단체위탁선거법, 농협법 개정
- 농식품부와 실무협의회 개최 : (8.31)농협법 개정(중앙회장 직선제) 선결과제* 관련 실무협의
 - * 부가의결권 적용, 중앙회장 권한집중 방지대책 마련, 위탁선거법 충돌조항 개정
- 국회 협력 추진 : 농해수위원 등* 면담 실시
 - * 여당 간사의원, 법안심사 소위원장 등
- 법안 상정 및 심사 : 농협법 일부개정안(중앙회장 직선제)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상정 :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회의(9.16)
 - 심사 : 법안소위(9.22) 결과 계류

Ⅲ. 전체회의 결과

1 1차 회의['19. 8. 21]

- (운영계획) 좋은농협위원회 운영계획, 소분과장 임명, 운영위 구성 등 논의
 - (기능) 농협의 정체성 재정립,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농협의 올바른 역할 등에 관한 주요 의제 논의
 - (소분과) 소관 의제의 심층 논의·검토를 위해 특별위원으로 조합분과 및 중앙회분과를 구성하고 각 소분과장* 임명
 - * 조합분과장 : 남성민 위원 / 중앙회분과장 : 허수종 위원
 - (운영소위) 특별위원장, 소분과장(2), 이호중·김기태 위원 등 5인
- (의제 논의) 농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협으로의 혁신
 - 주요 의제(안)은 ① (조합) 자주적 협동조직이자 판매조합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② (중앙회)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연합조직으로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등으로 설정
 - 제2차 본 위원회(9.24) 상정 의안으로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 논의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국회 촉구
 -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대의원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개정하는 방안에 합의함

2 2차 회의['19. 9. 5]

- (의제논의)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 2차 회의 의결 내용은 1차 회의 의결 내용을 포함하여 ‘의안 작성(회람) → 관계 부처 협의 → 농특위 운영위 검토 → 본 위원회 상정’의 농특위 절차에 따라 시행됨을 공지함

3 3차 회의['19. 11. 21]

□ (의제논의)

○ 농협 자체혁신 1차 과제(안)

- 그동안 분과별 논의를 통해 마련된 총 6건의 ‘농협 자체혁신 과제(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농협 자체혁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함
- 그 외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농협 자체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협의해 나가기로 함

○ 농협 미래비전 논의 과제(발표 : 김기태 위원)

- (발표 및 질의응답) 김영삼 정부시기 농발위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논의결과와 현재 농협을 둘러싼 내외부 이슈를 점검

4 4차 회의['20. 4. 28]

□ (의제논의)

- 2020년 좋은농협위원회 사업계획(안) : 원안대로 의결하되, 사업 계획 내용 보완
- 농협 자체혁신과제(1·2차) 실무협의결과 검토 및 향후계획(안) : 보류
 - 자체혁신 2차 과제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위원회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위원 의견 수렴을 거쳐 차기 회의 시 의결하기로 함

□ 기타 안건

- 농협선거제도 개선 의결의안 이행 관련 논의 : 기 의결('19.9.5. 좋은농협위원회 제2차 회의 및 '19.9.24. 농특위 제2차 본회의 의결)된 사안이므로 21대 국회 개원 시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

5 5차 회의['20. 7. 2]

☐ (의제논의)

- 농협 자체혁신 2차 과제 확정(안) : 원안대로 의결하되, 과제 내용 일부 보완

6 6차 회의['20. 8. 6]

☐ (의제논의)

-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과정 참여 방안(안) : 원안대로 의결
 - 위원회가 계획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에 위임

7 7차 회의['20. 9. 3]

☐ 보고안건

- 농식품부 실무협의회(8.31) 결과 등

IV. 향후 계획

1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 : 위탁선거법 및 농협법 개정 추진

⇒ **최우선 과제로 추진**

□ 관련 법 개정이 재추진되도록 관계부처 · 기관과 협의

- (선거 운동 범위 확대 및 유권자 알 권리 강화) 행안부 · 선관위 · 농협 등과 협의, 「공공단체 및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농식품부 · 농협 등과 협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 농식품부와 협력 강화
 - 국회일정 : 중앙회장 직선제 추진 관련 공청회 대응(11월 개최 검토중)

2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 정책연구용역 및 공개포럼**

□ 농협개혁의 청사진 마련을 위한 미래상 및 혁신과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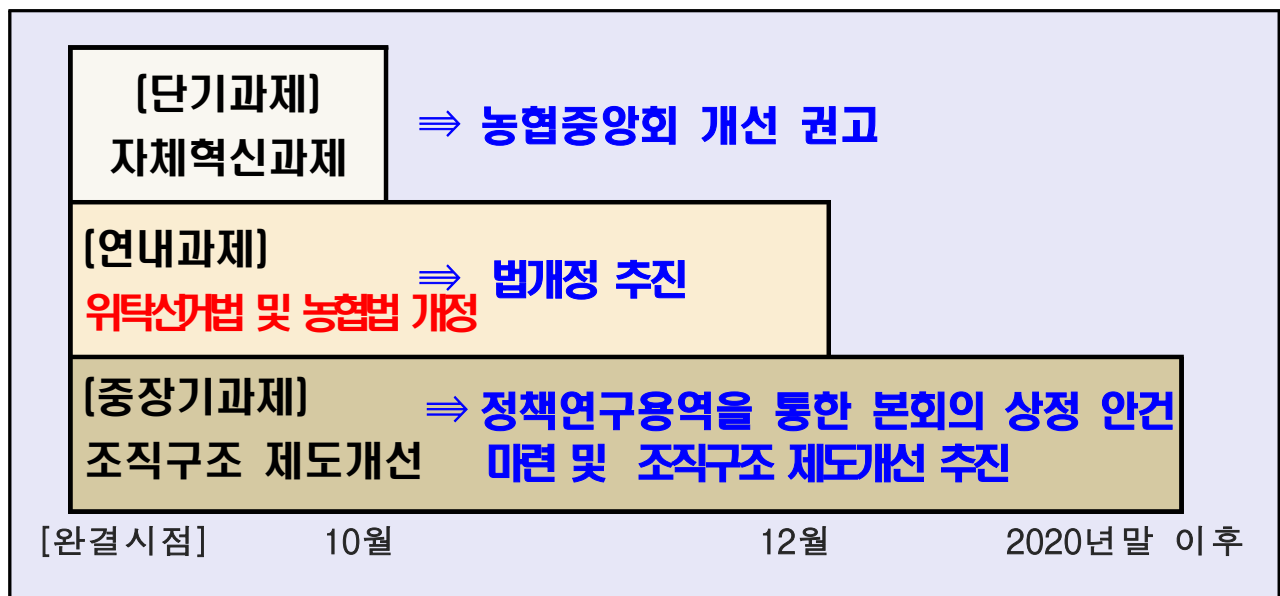
- 농협의 미래상 및 조직구조 개혁과제 등 본회의 상정 안건 마련(12월) 및 법개정 추진
 - 정책연구용역(농협 지속가능 미래발전 위한 조직구조 개혁과제 연구) 및 공개포럼*을 통한 농협의 미래상 및 조직구조 개선 방안(법개정, 제도개선) 마련
 - * 제4차 공개포럼 개최(10.8) : ①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농협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 ②농축협 간 협동, 타조직과의 연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11월) 및 본회의 상정안건 마련 시 관계부처 및 농협, 전문가 등과 실행 가능성 및 추가 연구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시

3 자체혁신과제 농협 제시 및 개선 권고

□ 농협 자체혁신과제 농협중앙회에 개선 권고(10월)

- 농협 자체혁신과제 농협에 개선권고 실시(사후관리 방안 등은 별도 논의)

4 과제별 완결 계획



- 참 고
1. 농협중앙회 자회사 관련 간담회 결과
 2. 좋은농협위원회 위원 명단

1. 목적 : 농협중앙회 자회사 관련 민원(바이오차) 논의
2. 일시 : '20. 7. 20.(월) 13:00~15:00
3. 장소 : 농협신관(농협은행) 3층 제1 소회의실
4. 참석 : 11명
 - 좋은농협위원회(2) : 강기갑 위원장, 이호중 위원
 - 농특위 사무국(1) : 최수형 전문관
 - KD아그로(2) : 김국태 대표이사, 김명훈 상무이사
 - 한농연(1) : 최홍식 강원도회장
 - 농협경제지주(2) : 손황제 팀장, 권문광 과장
 - 농우바이오(2) : 허덕재 본부장, 문승일 단장
 - 경동개발(1) : 이현택 전무, 양현국 그룹장
5. 쟁점사항 : 농협 계통구매 이후 바이오차 가격이 폭등한 원인

<기존 유통구조>

경동개발 ⇨ **경동아그로** ⇨ 지역농협 ⇨ 농업인 : 최종소비자 가격 1만원

* '17.7월 사업중단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취소

<바뀐 유통구조 : 농협 계통구매>

경동개발 ⇨ **바이오차테크** ⇨ **농우바이오(상림)** ⇨ **농협경제지주**

⇨ 지역농협 ⇨ 농업인 : 최종소비자 가격 1만7~8천원

* '19.1월 농협계통계약 체결(계통가격 1만7천원, 유기농업자재 공시사격 2만원)

[참석자 주장]

- * KD아그로(민원사) : 유통과정이 농협자회사로 변경된 후 가격 급등(1만원→1만7~8천원)
- 경동개발 : 기존가격(1만원)은 정상가격이 아니며 '19년 사업재개시 가격상승 요인 존재
- 농협경제지주 : 유기농업자재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가격 및 거래사례 등을
참고하여 계통공급가 결정함

6. 간담회 결과

- 농협자회사를 통한 유통과정에 개선 요인이 크게 있음을 상호 공감
- 향후 농민에게 양질의 농자재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사나 유통사, 농협이 협력하고 농협중앙회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협의함
- 위원회는 농협의 후속조치 마련 및 개선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참고 2

좋은농협위원회 위원 명단

(2020. 9. 30. 현재)

구분	성명	주요경력	비고
1	강기갑	· 前 국회의원	위원장
2	강성근	· 前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원장	
3	김광천	· 現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	
4	김제열	· 現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5	김진열	· 現 군위축협 조합장 · 前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운영위원	
6	나종구	· 現 홍천사랑말한우영농조합법인대표	
7	남성민	· 現 진주진양농협 이사(前감사)	
8	박성재	· 現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 ·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9	손병철	· 現 완주고산농협 상임이사	
10	송영조	· 現 금정농협 조합장 · 前 농협유통 이사	
11	이정학	· 現 (전농)충남 협개위 위원장	
12	이호중	· 現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간사위원
13	신영수	· 現 농협중앙회 기획실장 · 前 농협중앙회 회원경영컨설팅부장	
14	최창열	· 現 거창축협 조합장	
15	허수종	· 現 정읍샘골농협 조합장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안)

2020. 10. 1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안)

- ◆ 코로나19, 기후 식량위기,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는 농정의 대전환을 위해 농어민과 농어촌주민, 시민과 국가 사이에 사회협약을 추진하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의제를 논의하고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국민 참여운동 전개

□ (배경)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소비자와 시민사회, 지방과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통해 농정 틀 전환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추진 동력 확보 필요

- 코로나19,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에 대응하는 농어업·먹거리 정책과 농어업 지속가능성 및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농정대전환 필요

- 세계 각국은 이해당사자간 갈등 조율, 효과적 정책결정,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공유

* 한국 투명사회협약(2005),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1987), 스웨덴 살트세바덴협약(1938)

□ (경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2월), 사회협약 기초계획 수립용역(6~8월), '사회협약 추진계획' 운영위 보고(8.28) 진행

- 시민사회단체 연구용역팀은 의제 선정 과정에 시민단체 참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상향식으로 의제를 선정할 것을 제안

□ (계획) 운영위 논의 결과를 감안하여 사회협약을 단계적으로 추진 하되 우선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사회협약 의제 선정 및 구체화 등 선행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 후속 사업 추진

* (예산) 당초 : 2억원 -> 변경 : 0.5억원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운영지원 및 사회협약문 초안·본안 작성 등을 위한 용역 발주(10월)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2020. 10. 1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및 경과	119
II. 농어업·농어촌 뉴딜[안] 주요내용	120
III. 향후 추진 계획	123
[참고] 뉴딜 비전 체계도	124

I. 추진배경 및 경과

- ◆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농어업 관련 정책 소외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은데 따라, 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정책’ 초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어업 농어촌분야 뉴딜’ 정책방안 제시

* 초안은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의견조회 뒤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 등과 부처협의, 원탁회의·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계획

1 추진 배경

-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소외를 지적하는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큰 상황
- 현장 목소리와 그 동안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농특위 차원의 농어업 농어촌 분야 뉴딜(안)을 마련하여 당정에 제시할 계획
 - 국회 그린뉴딜 토론회 발표자료(황수철 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보고자료(이호중 소장), 단체별 요구안 등의 수렴

2 추진 경과

- 농특위 사무국 및 농어민단체 실무책임자, 전문가로 ‘뉴딜 작업반’을 구성하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계획’ 마련
 - 작업반은 농특위 김영재 사무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내부에서 사무부국장 및 각 팀장, 외부에서 7개 기관·단체* 참여
 - * 한국농축산연합회, 녀름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먹거리연대, 농어업정책포럼,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8월 중 3차례 회의를 거쳐 5대 영역 13대 과제를 설정하여 초안 작성
 - 정부부처 및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에 1차 의견조회 (9.9 - 9.18)

II. 농어업·농어촌 뉴딜 계획 주요 내용 * 부처 협의 중

1 비전 및 목표

□ (비전)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 해결을 주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

○ 농정틀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연계추진

* 대선공약, 대통령제시 농정비전('19.12.12), 농특위 12개 개혁 아젠다 등

□ (목표) 농정 대전환을 위한 뉴딜 목표

- ① (기후위기) 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환경복원을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
- ② (먹거리 위기)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으로 먹거리 주권 확립
- ③ (농어촌 소멸과 도시과밀화 위기) 에너지자립, 삶터·쉼터·일터의 조화로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 ④ (농어가 경영 위기) 농어민 삶의 안전망 구축

2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중점 과제·전략

*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한 4대 중점과제와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5대 정책수단 제시

① 탈탄소·생태(유기)농어업 전환

○ 온실가스 순제로(net zero)배출 및 생태환경 복원을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 ① 화학비료(축분퇴비대체) 및 농약, 항생제 사용량 50% 감축(30년)
- ② 논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단계적 전환 및 친환경농업 비중 30% 확대(30년)
- ③ 경축순환형·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 ④ 숲 탄소흡수력 제고, 국내산목재수요 창출 및 활용 강화(콘크리트·플라스틱 대체)
- ⑤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수산업생태계 구축(바다탄소흡수원 확충, TAC지속가능어업관리체계 전환 등)

②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서 먹거리주권을 확립하여 국민 먹거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 ① 식량자급률 제고(10%p ↑, 30년), 주요 곡물자급확대(밀10% ↑, 콩25% ↑) 및 적정생산농지 확보
- ② 국가 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친환경·로컬푸드로 공공급식 전면화
- ③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먹거리 안정성 확보

③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감축 및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 기후위기 극복은 전체 온실가스의 상당부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 전환 없이 불가능, 농어촌은 재생에너지의 寶庫(보고)이므로 지역분산형 에너지 자립 추진
- 삶터·쉼터·일터가 조화되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조성하여 농어촌지역 소멸과 도시과밀화 위기를 동시에 극복

- ①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 * (30년) 농어촌태양광 확대(20GW), 농어촌에너지자립마을 200개소
- ② 바이오에너지 (축분·목재 등 농어업부산물) 활용 에너지자립 확대
 - * (30년) 축분바이오에너지 100개(지자체별1개), 목재바이오에너지 100개 산촌에너지자립마을
- ③ (가)농어촌재생특별법 제정 등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365생활권 구축
- ④ 청년후계농 육성, 귀농어·귀촌 및 다지역거주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④ 농수산물 수급·가격안정 및 농어가소득안정망 구축

- 가격불안정, 도농소득격차, 재해 등 농어민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 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도입

- ① 공공급식 등에 국내농수산물 공급체계 확립(공공비축수매제 등) 및 디지털통합 플랫폼 구축(농지-생산-유통-소비 통계) 등 수급·가격안정 종합체제 완비
- ② 농가소득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대책의 국가보상체계 강화 및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사회보험 전환

3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 5대 중점전략 [정책수단]

① 공익형 직불제 예산 대폭 확대 및 농림수산물분야 예산 확충

- ① 공익형직불제 예산 1조원 증액 및 농림수산물분야 예산을 전체 정부예산의 5% 수준 유지
- ② 투입재 보조형 사업 축소 및 신규직불예산 확대로 자원마련과 직불중심농정전환

② 법률 제·개정으로 농어업·농어촌 대전환 제도적 뒷받침

- ① [제정] (가)국가먹거리기본법, (가)농어촌재생특별법 (가)연근해어업혁신특별법 등
- ②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수산업·어촌공익증진직불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식품위생법,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③ 지방분권형·민간협치형 농정으로 농어업·농어촌 대전환 추진체계 확립

- ①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 및 중앙-지방정부 계획협약제도 도입
- ②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및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 개혁

④ 사회협약 등 국민참여형 사업추진으로 농어업·농어촌의 대전환 추진

- ① 국민 공감대 형성 및 농어민·농어촌주민·시민사회 추진역량강화(교육·홍보·참여)
- ② 「국가-시민사회-농어민·농어촌주민」 간 사회협약 체결

⑤ 4차산업혁명, 스마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업·농어촌 혁신 뒷받침

- ① 농어업SOC(농지정보, 기반시설 등)디지털화, 농어업 스마트화, 농어촌 스마트화, 임업·산촌스마트화
- ② 연구개발(R&D) 혁신

Ⅲ. 향후 추진 계획

☐ (정책협의) 부처 및 기관*과 뉴딜(안) 확정 위한 세부협의 진행

*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KREI, KMI

☐ (원탁회의) ‘전국순회원탁회의’ * 의 논의주제로 ‘농어업 농어촌 분야 뉴딜’을 추가해 농어민, 소비자, 공직자, 전문가, NGO 등의 의견 수렴

* ‘국가먹거리종합전략을 위한 전국순회원탁회의’를 전국 5개 권역 500명 추진 중

☐ (국회토론) 당정과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종합토론회 추진

☐ (본회의 의결) 분과위, 농어민 먹거리 단체,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한 뉴딜(안)을 4/4분기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상정

** 분과위, 농어민 먹거리단체, 관계부처 의견 수렴은 다음 본회의 전까지 지속 추진

☐ (시행요청) 의결된 안을 당정청 협업으로 추진하고 각 기관에 농어업 농어촌 분야 뉴딜 계획을 송부하여 시행하도록 요청

[참고] 농어업·농어촌 분야 대전환을 위한 뉴딜 비전 체계도

비전	기후·먹거리·지역·안전망 위기 해결을 주도하여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	
목표	◆ 온실가스 순제로 및 생태환경복원 선도하는 농어업으로 전환 ◆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먹거리 주권 확립 ◆ 지역에너지 자립과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 농어민 삶의 안전망 구축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점 과제	탈탄소 생태(유기) 농어업 전환	① ('30년) 화학비료·농약·항생제 50%감축 ② ('30년) 친환경농업 비중 30%로 확대 ③ 경축순환·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토양양분관리제 도입 등 ④ 숲탄소흡수력제고 및 목재활용(콘크리트·플라스틱 대체) ⑤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수산업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 먹거리 시스템 구축	⑥ ('30년) 곡물자급률제고(10%p ↑) 및 적정농지확보 ⑦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공공급식 전면화 ⑧ GMO완전표시제 도입 등 먹거리 안전성 강화
	농어촌재생에너지 확대 정주여건 개선	⑨ 주민주도형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대 : 태양광 20GW('30년) ⑩ 바이오에너지(축분, 목재) 활용 에너지자립 지역·마을 확대 ⑪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365생활권 구축
	농수산물가격안정 농어가소득안전망 구축	⑫ 공공급식 공급체계 확립(공공비축수매제 등), 디지털 통합플랫폼 구축 등 수급·가격안정 종합체제 완비 ⑬ 농가수입(소득)보장보험 도입, 농어업재해 국가보상 체계강화, 농어업인 안전보험의 사회보험 전환 ⑭ 미래 농어업·농어촌 주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수단	예산·재정	직불제 예산1조원 증액 및 농림수산물분야 예산5%유지
	법·제도	국가먹거리기본법 및 농어촌재생특별법 제정 등
	추진 체계	지방분권형·민관협치형 농정 추진체계 확립
	추진 역량	국민참여형 사업추진, 국가·시민·사회농어민 사회협약 체결
	기술 혁신	스마트 첨단기술 적용, 연구개발 확대로 혁신 뒷받침

제5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2020. 10. 13.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1. 개요

□ 일시 · 장소 : 2020. 7. 14(화). 14:00~16:3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 인원 : 26명

○ (주재)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 (당연직 위원) 5명 중 3명 참석

* 대리참석 : 농식품부 차관 ·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위촉직 위원) 24명 중 22명 참석

* 불참 : 정은조 남북산림협력포럼 이사장,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2. 주요 내용

□ (심의안전)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

○ (내용) 좋은농협위 6개월, 농산어촌청년희망위 4개월 연장 원안 의결

○ 주요 의견 및 조치 계획

- 특별위 연장시에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고 신설시에는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 특별위 연장 절차만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신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신설시에도 본회의 보고·논의를 거칠 계획

□ (보고안전)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내용) '19년 본회의 의결사항* 점진 결과 정상 추진 중

* 농협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지속 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 주요 의견 및 조치 계획

- 수협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 건의

☞ 좋은농협위원회 설치 당시, 농협 선거제도에 대해서만 우선 다루고 수협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수협·해수부 등 논의를 거쳐 필요시 별도의 특별위 설치 검토

-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체 농민 직선제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전체 조합장 직선제 도입은 기 의결 사항이므로 우선은 의결된 내용으로 추진하고, 제기 의견은 추후 논의

- 바이오에너지 사업 활성화는 가축분뇨에 국한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등 농촌 에너지 순환과 연계하여 큰 틀에서 논의 필요

☞ 농어촌 분야 에너지전환포럼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해 메가 트렌드 차원에서 검토 중

-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의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재방법 필요

☞ 축산 소분과 및 공익형직불제 소분과에서 관련 내용 논의 중이며, 연구용역도 추진 중임

□ (보고안전) '19년 중점 정책연구과제 연구용역 결과

○ (내용)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방안, 농정 추진체계 재편 방안, 직불제 중심의 농정방향 개편 등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보완 방향 논의

○ 주요 의견 및 조치 계획

- 농업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한 논리·역할 강화, 선택형 직불제에 대해 특정 지자체를 통한 중앙-지방정부 협력체계 시범 운영 검토,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물·토양·대기 개선지표 등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 농민수당 문제와 직불제 연계 방안, 신규 조성 농지에 대해 경작기간 기준을 마련하여 직불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고민 필요

-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소분과 논의 등을 통해 제기 의견 검토

- 수산분야의 공익적 가치 및 직불제 확대 관련 연구용역 추진 필요

- ☞ 수산 직불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

□ (보고안전) '20년 중점 관리과제 추진 계획(안)

- (내용) 농산물 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 강화,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수립,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등 추진 계획 보고·논의

- 주요 의견 및 조치 계획

-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중점 과제 추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구 설립 제안

- ☞ 농어업·농어촌 뉴딜 추진방안 수립 중으로, 식량안보 문제는 뉴딜에 포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

- 종전 축산방역질병개선 TF 구성 제안에 대한 조치 부재

- ☞ 9.11일 축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TF 구성 등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차년도 과제로 검토하기로 함